

제417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8월20일(화)

장 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6)
2.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59)
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0)
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7)
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7)
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2)
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7)
8.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3)
9.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0)
10.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4)
1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5)
1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53)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7)
14.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8)
15.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4)
1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34)
1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37)

상정된 안건

1.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6) 5

2.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59)	5
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0)	5
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7)	5
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7)	5
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2)	5
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7)	5
8.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3)	5
9.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0)	5
10.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4)	5
1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5)	5
1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53)	5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7)	5
14.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8)	5
15.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4)	5
1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34)	5
1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37)	6

(10시08분 개의)

○소위원장 김원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김원이입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소위원장으로서 간단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근의 무더운 날씨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민생활의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패권 경쟁에 따라 지식재산의 보호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소위원회는 산업, 에너지, 통상 등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을 담당하고 있는 특허청 소관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소위원회 활동이 국민경제와 산업정책 전반에 직결되어 있는 만큼 내실 있는 법률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소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듣고 생산적이고 밀도

있는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 말씀 드립니다.

오늘 소위원회 첫 회의니까 간단하게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의힘 고동진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진 위원** 오늘 여러 안건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저는 국회 처음이다 보니까, 17개 안건이면 굉장히 많은 게 아니라고 그러네요. 저도 배우는 시간이 될 거고. 오늘 이렇게 와 보니까 또 카메라도 없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집중적인 토론이 될 것 같아요. 산자위는, 특히 이런 것 관련된 것은 큰소리 날 일이 없으니까 저도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고맙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위원님.

○**김동아 위원** 반갑습니다. 서울 서대문갑 김동아입니다.

맨 앞자리에 앉았더니 뭔가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고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카메라도 없는 상황에서 조금 더 허심탄회하게, 정말 우리 국가와 민생을 위해서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 의성·청송·영덕·울진의 박형수 위원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인 토론이 될 수 있고, 여야 간에 여기서 격론이 벌어지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앙금이 생기지 않는 그런 소위원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야지 진짜 제대로 된 토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 위원** 서울 노원의 김성환입니다.

대한민국 산업이 백척간두인데 여야가 합심해서 대한민국의 산업·일자리·경제가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감사합니다.

다음, 서일준 위원님.

○**서일준 위원** 대한민국 최고의 조선산업 도시 또 관광·휴양 도시 거제 출신 서일준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에서 다루는 안건은 거의 아마 민생 안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야가 마음을 모아서 심도 있게 정말 무엇이 우리 국민들한테 진정으로 도움되는가라는 결론해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서일준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 박지혜 위원님 인사 부탁합니다.

○**박지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정부갑 박지혜 위원입니다.

저도 역시 첫 번째 법안소위여 가지고 정말 오늘 생산적인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설레는 마음으로 왔고요.

저는 17개는 굉장히 많다, 오래 걸린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역시 여러 가지 견해가 국회에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고맙습니다.

서왕진 위원님 인사해 주세요.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 비례의원 서왕진입니다.

개원하고 여야가 좀 차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제 경우로는 첫 자리인 것 같습니다.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고요.

오후에 제가 속해 있는 혁신정책연구원 창립행사가 있어서 부득이 오후에는 빠지는 점 양해 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반갑습니다.

이재관 위원님 인사 부탁합니다.

○**이재관 위원** 반갑습니다. 충남 천안을의 이재관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소위가 정부 공무원들한테는 가장 긴장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용 중심으로 논의하는 또 심도 있게 논의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배우면서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욱 위원님 인사 부탁합니다.

○**정진욱 위원** 광주 동·남갑 정진욱 위원입니다.

대한민국은 대전환 시대에 처해 있습니다. 산업의 위기 속에서 디지털전환과 에너지전환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지역구에는 에너지밸리 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도 더 각별한 관심과 책임감을 느끼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위한 산자중기위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차근하게 중요한 법안들 통해서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성무 위원님 인사 바랍니다.

○**허성무 위원** 반갑습니다. 창원시성산구 허성무 국회의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뛵고 이렇게 소위에서 다시 뛵는데 정말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올라와 있는 오늘 심사해야 될 법안들만 봐도 우리 국민들의 삶에 정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법안들이기 때문에 소위에서의 역할이 참 막중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정말 깊이 있고 허심탄회한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좋은 결론들을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소위 위원장님께, 간혹은 가나다 역순으로 한번 인사말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강승규 위원님은 본인이 주관하는 포럼의 토론회 행사가 있어서 좀 늦으시나 봅니다. 인사하지 못한 위원님은 오시는 대로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를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법률안 심의에 앞서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 및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
1.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6)
 2.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59)
 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0)
 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7)
 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87)
 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2)
 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7)
 8.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3)
 9.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0)
 10.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4)
 1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5)
 1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53)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7)
 14.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8)
 15.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4)
 1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34)

1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37)

(10시17분)

○**소위원장 김원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1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하나 뭐 좀 질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고준위 방폐장에 관한 법률은 여기 안 들어가 있던데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소위원장 김원이** 고준위 방폐장법은 발의한 법안이 전체회의를 통해서 상정된 거고요,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때는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한 법안만 소위에 올라오거든요. 고준위 방폐장법은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 법안은 발의돼 있는 반면 그걸 준비하고 있는 다른 민주당 의원님들의 의견들은 나오지 않고 있어서 그런 의견까지 같이 포함해서 나중에 상정하겠다는, 법안소위에서 다루게 된다는 점을 미리 양해 말씀 드립니다.

나중에 다시……

○**박형수 위원** 언론에서 많이 물어봐 가지고 저도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 공식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소위원장 김원이** 나중에 하여간 여러 법안을 병합해서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1건밖에 없잖아요, 김성환 의원님 것.

○**김성환 위원** 발의를 했는데 아마 숙려기간인 것 같고요, 상임위 전체 안건에 아직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발의한 안이 21대에 여야가 거의 합의하고 정부가 거의 동의한 안을 제 이름으로 올려서……

○**박형수 위원** 하나만 다르던데요. 다 똑같고 하나만 다르던데.

○**소위원장 김원이** 이게 기간이 지나면 다음 전체회의 할 때는 아마 안건 상정이 돼서 법안소위로 넘어오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같이 병합심사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때 21대, 김성환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그때 고준위 방폐장법을 처리할 때 해상풍력법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법을 같이 처리하자라고 하는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합의 정신도 좀 살려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번……

○**박형수 위원** 하세월인데, 그렇게 연기하면.

○**김성환 위원** 예?

○**박형수 위원** 그렇게 연기하면…… 21대 때 했던, 같이 처리하기로 했던 그걸 지금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소위원장 김원이** 그 정신은 살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박형수 위원** 21대하고 22대하고 달라졌는데 어떻게 그 정신이 계속됩니까?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어쨌건……

○**김성환 위원** 아니, 참고로 말씀드리면 21대 마지막 직전 원내대표들끼리 상당히 의견

접근을 하셔서 우리도 그 의견 접근을 최대한 존중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했던 게 민주당이고요 막판에 채 상병 특검법 때문에 아예 상임위와 법사위를 안 열었던 게 국민의힘입니다.

○박형수 위원 이렇게 가면 이제 한판 하자는 얘기인데요.

○김성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소위원장 김원이 박 위원님이나 김 위원님, 하여간 어쨌든……

○박형수 위원 그건 하여튼 나중에 상정되면 다시 논의하든가 합시다.

○소위원장 김원이 예, 그렇게…… 첫 번 회의부터……

○김성환 위원 그런 과거가 있었다.

○소위원장 김원이 서로 할 얘기는 있는 것 같아서 다음번에 김성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우리 법안소위로 넘어오면 열심히 그때 서로 토론해서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의사일정 제1항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개정안은 발명교육 지원을 받는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범위를 확대하고 발명교육 지원사업의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으로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 대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소위원장 김원이 어느 자료를 보면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소위 심사자료.

○소위원장 김원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소위원장 김원이 몇 페이지?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소위 심사자료 1쪽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다 찾으셨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안은 발명교육 지원을 받는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범위를 확대하고 발명교육 지원사업의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1호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의 자녀를 추가하고 발명교육 지원사업에 발명교육을 위한 교재 및 교구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대상에 특수교육대상자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경우에 이들에 대한 발명교육 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2쪽입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의 기준이 모호하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 수급권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자체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밑의 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의 개정안 5호까지는 현행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1호부터 5호까지는 현행법에 있는 내용이고 추가된 내용이 6호·7호이고 8호도 현행의 4호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6호·7호가 이번에 추가된 개정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개정안 7호의 그 밖에 소득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의 자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같은 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로 적용 대상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 밑의 2항은 단순 자구 수정입니다. 지자체를 지방자치단체로 단순 자구 수정하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특허청장 김완기** 정부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고 검토의견과 같이 수정하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의 동의가 있었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김성환 위원** 좋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허성무 위원님.

○**허성무 위원** 청장님, 이렇게 의원님들이나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새로운 항을 추가할 수가 있고 또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다른 수요가 발생해서 또 다른 항을 계속 추가해 넣는 것은……

○**소위원장 김원이** 마이크 좀 대고 말씀해 주세요.

○**허성무 위원** 그때그때마다 또 이렇게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럴 때는 오히려 좀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식 같은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특허청장 김완기** 교육부와 사실은 협업해야 될 부분도 있고 다른 교육 관련된 법률도 보면 사실은 상당히 이렇게 법률 단위에서 수급권자를 상세히 규정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에 가기보다는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하나의 복지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 사정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법률 단위에서 규정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성무 위원** 그러면 추가해야 될 대상자가 늘어날 때마다 지속적으로 개정하는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개별법에 규정해 놓는 게 더 좋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특허청장 김완기** 예,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시는 건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면 의사일정 제1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자료 6쪽입니다.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반도체설계재산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조에 반도체설계재산의 개념을 정의하고 안 제5장의2를 신설해서 반도체설계재산의 육성과 관련된 기본계획의 수립, 인력 확보,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반도체설계재산진흥센터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밑의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문별 검토에 앞서서 총괄 검토 부분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 메모리반도체는 점유율 한 60% 정도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으나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23년 기준 3%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스템반도체 분야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60~7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육성이 필요한데 특히 반도체 설계(팹리스) 분야의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에 근거해서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정책을 추진 중이나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특정 분야인 반도체설계재산 육성과 관련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나 개별 법률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반도체설계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스템반도체 설계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산자부가 주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진흥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 심사 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반도체설계법은 배치설계권의 보호와 공정한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허청 소관 법률입니다. 따라서 이 법에 반도체설계재산 산업 육성에 관한 산자부 소관 업무를 신설해서 이원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입법 목적과 운영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로 시스템반도체 산업 관련 기술은 반도체설계 이외에 생산, 조립, 검사 단계별로 구별되는데 개정안은 이 중에 반도체설계재산에 한정해서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이라는 입법 목적 달성에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산업부와 특허청은 개정안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총괄하는 산자부 소관으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참고로 21대 국회에서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반도체 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특별법 여러 건이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우선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한번 먼저 들어 보시고 개별 조문에 대한 검토를 할지 한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특허청장 김완기**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부가 시스템반도체 핵심 IP 개발사업 등 개정안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상당 부분은 이미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반도체 산업을 총괄하는 산업부 소관으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현행법은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창작자의 권리보호 및 배치설계의 공정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 법에 반도체설계재산의 육성을 관리하는 산업부 업무와 관련된 반도체설계재산의 개념을 신설해서 이원적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입법 목적과 성격, 운영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들었고요.

위원님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 정부 측.....

○**소위원장 김원이** 박형수 위원님 잠깐만요.

참고로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이규봉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직무대리께서 배석해 있으니 질의 시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수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이 특별법안 준비 상황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 됐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첨단산업정책관직무대리 이규봉** 지금 현재 반도체 산업 육성은 국가 첨단산업특별법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의원 발의안으로 다수의 반도체 특별법안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같이 협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형수 위원** 그러면 일단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이 특별법안 6건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여기에는 지금 현재 이 법안에, 개정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의 전체가 다 포함돼 있고 다른 육성정책들도 같이 규정이 돼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박형수 위원** 그러면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개별 법안, 의원들이 개별 제출한 법안 플러스 빠진 부분까지도 다 같이 해서 종합적인 것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지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를 거기에 녹여 내서 그렇게 법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준비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준비하고 있지는 않나요?

○**산업통상자원부첨단산업정책관직무대리 이규봉** 지금 현재 발의돼 있는 반도체 특별법은 단순히 설계기업인 팹리스뿐만 아니라 제조기업, 소부장기업, IP기업들을 포함해서 규정화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설계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지원의 근거가 필요한 조항이 있다면 저희가 국회와 협의해서 조항 삽입의 건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형수 위원** 정부 측은 지금 그러면 종합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별 법안들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삽입하는 형태로 해서 전체 법안 모양을 만들겠다 그런 취지네요?

○**산업통상자원부첨단산업정책관직무대리 이규봉** 오늘 논의가 있기 때문에 이 논의 결과에 따라서 그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형수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고동진 위원님.

○**고동진 위원** 이게 먼저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구자근 의원님께서 일부개정안 발의한 내용은 반도체설계재산에 대한 어떤 권리보호 측면이 사실은 강한데 입법 취지는 팹리스 산업에서 설계에 관한 것을 테마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 팹리스 산업을 육성할 것인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인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조금 애매모호한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 얘기한 대로 좀 내용이 보완돼야 된다, 그게 첫 번째고.

반도체 특별법은 저도 6월 19일 날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안에는 사실 팹리스, 파운드리, 메모리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팹리스 쪽의 산업 육성을 위해서 설계뿐만이 아니라 디자인, 제조 그다음에 패키지 이런 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팹리스 법안을 사실은 제가 따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산자부하고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만들고 있는 것은 거의 다 만들어는 놨지만 조금 뒤로 하고, 먼저 구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일부 보완을 필요로 한다, 나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정부 쪽에서도 지금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왜냐하면 기존의 것은 특허청이 주관을 하고 있는 법이고 이 산업 육성에 대한 것은 산자부 쪽에 어떻게 보면 더 주관이 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개정안은 산자부와 특허청이 같이 다룰 수 있는 그런 법안으로 수정되고 개정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김동아 위원** 저 잠깐 한 말씀만.....

○**소위원장 김원이** 김동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아 위원** 저는 과연 반도체 전체도 아니고..... 반도체에서의 설계, 팹리스 중요하지요. 그런데 과연 입법적으로, 특별법도 아니고 그냥 보통 입법적으로 이것을 지원법을 만드는 게 사실 맞을까 이런 의문이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부 정책상으로 추진해야 될 문제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의약품 설계도 자기가 하겠다고 좀 지원해 달라는 법을 만들어 달라 할 때 저희가 그런 요구를 과연 거부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전통사업에서, 특정 분야에 관해서 우리 산업이 지금 어려우니까 이것에 대해서

법률안을 만들어 달라 했을 때 과연 그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을까. 이런 전체적인 의문이 있는 상황에서 산업부 내부나 아니면 위원님들께서도 좀 그런 고민을 함께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다른 분들도 의견 있으면……

정진욱 위원님.

○**정진욱 위원**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는데요. 보니까 21대에서도 사실은 이 법안을 발의를 했다가 통과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이어서 반도체 설계와 관련된 아주 일부분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팹리스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법안으로서는 조금 규제 대상이 너무 좁아서 부족하다는 그런 것에는 우리가 다른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입법자의 의지라 할까요, 구 의원님께서 굉장히 기업에 대해서도 잘 아시고 하는 분께서 이번에 또 똑같은 내용의 법안을 낸 이유가 뭘까. 제가 같은 당이 아니어서 한번 사실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 자체는 존경하는 고동진 의원님께서 내시는 팹리스 법안을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팹리스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안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런 의사가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궁금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고동진 위원** 제가 잠깐 답을 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김원이** 예, 고동진 위원님.

○**고동진 위원** 오전에……

○**소위원장 김원이** 저기, 참고하실 것은 정부 측에 주로 질의를 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 법률안에 대한. 그리고 각각 다른 위원님들에 대한 것은……

○**정진욱 위원**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려 했는데 먼저 잠깐 말씀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원이** 예, 먼저 말씀하시지요.

○**고동진 위원** 정 위원님 말씀에 잠깐 같이…… 구 의원님께서 이 안을 발의를 한 것은 입법 취지 그대로 팹리스 산업이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아마 2%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지금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구미나 창원이라든가 이쪽에 보면 팹리스 관련된 패키징 쪽 일부 사업장들도 존재하고 창원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한번 어떻게 좀 육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취지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팹리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뿐만이 아니라 디자인, 패키징, 여러 개가 쓰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아우르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아침에 서로 의견을 공감을 해 주셔서 제가 그것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진욱 위원** 그것을 받아서 조금 산업부에 여쭤보고 싶은 게요.

○**소위원장 김원이** 특허청입니다.

○**정진욱 위원** 산업부와 특허청에 함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팹리스 산업을 우리가 키워 내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 반도체 회사들의 성장 경로가 IDM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방식으로 성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TSMC 같은 그런 파운드리 회사를 지향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팹리스 회사로 따로

독립해서 하기도 어려운 이런 구조인데.

산업 발전의 경로가 전혀 다른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그런 다른 분야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키워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법안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그걸 통해서 과연 그 산업이 커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벗어난 새로운 반도체 회사의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고는 팹리스라든가 파운드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특허청장 김완기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산업부의 직무대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 자체가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팹리스 부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제조, 패키징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아우러져야 시스템반도체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 생태계가 강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을 만든다고 해서 반드시 산업이 성장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법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지원 의지, 육성 의지를 천명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소위원장 김원이 예.

○김성환 위원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히 고동진 위원님께서는 협업에 계셨고, 지금 소위 기계와 인간이 공존하는 AI 시대에 반도체가 차지하는 위치는 국가 산업과 일자리에 매우 결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야 관계없이 지금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계획을 짜고 있고 또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중에 소위 헤드쿼터에 해당되는 부분이 팹리스 영역인데 그 영역 역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분야지요. 그런데 그 정책적 논쟁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오늘 전체적인 전문위원 보고나 부처 의견이나 위원님 의견을 종합해 본바 구자근 의원님 안은 오히려 산업부의 반도체 특별법을 다룰 때 이 취지의 내용을 녹여서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심도 깊은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시는 걸로……

○소위원장 김원이 의견들을 모아 보면 방금 김성환 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신 내용으로 대체적으로 의견들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동진 위원 잠깐만, 하나……

○소위원장 김원이 예, 고동진 위원님.

○고동진 위원 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런데 아까 김동아 위원님의 팹리스 같은 것을 어떻게 법으로 녹여 낼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2건을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팹리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기업이 별로 없어요. 지금 삼성은 개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스타트업이나 작은 벤처 중심으로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5나노 공정의 프로토타입을 하나 만들면 현재 100억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그것보다 약간 낮은 것은 한 50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현재 이것에도 굉장히 많은 보조금 지원을 필요로 한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가 사실 삼성, SK 중심으로 돼 있고 동부가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의 일들을 하는데 국내의 작은 팹리스 회사들을 수용을 잘 안 해 줘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나가서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만의 TSMC만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데 최근에 언론에 미디어텍이라고 하는 회사가 뜨고 있어요. 미디어텍이 진짜 한 15년 전에 무슨 장난감 만들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이렇게 떠오른 이유가 TSMC 같은 자국 내 파운드리가 애들의 프로토타입을 해 준 거예요.

물론 이런 것은 법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팝리스 회사들이 안는 자금 부담에 대한 것을 법으로 어떻게 녹여 줄 수 있다면 분명히 여기는 성장시킬 수 있다, 파운드리하고 같이.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특별법에다가 이것을 녹이기보다는 큰 그림은 녹이지만 별도로 해서 관리를 해 주는 게 옳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알겠습니다.

지금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집중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따로 정리 안 하겠습니다. 2항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면 의사일정 제2항 법률안은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허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완기 특허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해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허청장 김완기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리됐으므로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4건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의사일정 제3항부터 6항까지 박주민·정동만·전재수·박용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들은 취약계층 등 전기요금 감면 그리고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내용별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과 정부 지원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또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전은 기본공급약관에서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할인제도 그리고 초중 고등학교 등 특례할인제도를 통해서 또 재난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약관에 따라서 전기요금 감면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한전 약관 이외에 노인복지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개별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어서 일반 법인 전기사업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고 그래서 일반 국민이 전기요금 감면 규정을 일괄

적으로 확인하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밑에 감면 대상을 발의 의원별로 각 개별 법률에 따른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또한 정동만 의원안은 공익상 전기요금 감면이 필요한 경우로서 하위법령이 정하는 사람 또는 시설의 경우에, 또 박주민 의원안은 다른 법령에서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람 또는 시설에 대해서도 전기요금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등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을 개정안과 같이 법률에 근거를 두면 국민이 감면 내용을 쉽고 명백하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 개정안에 대해서 한전은 특정 고객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을 법제화할 경우에 향후 제도 변경 시 법 개정이 필요해서 정책 수요를 반영하는 신속하고 탄력적인 복지할인제도 운영이 어려우며 현재도 폭넓은 복지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고, 기재부는 전기요금 감면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한전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또 개정안에는 혹한기 또는 혹서기 전기요금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을 전재수 의원, 박주민 의원 각각 담고 있습니다.

우선 전재수·박용갑 의원안은 폭염·혹한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고, 박주민 의원안은 혹한기 또는 혹서기 등 전기요금의 감면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면의 대상이나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박용갑 의원안의 경우에는 주택용 전기요금을 최소 100분의 30 이상, 30% 이상 감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폭염·한파로 인해서 생명·신체 안전에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의 냉난방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개정안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요금 감면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박주민·박용갑 의원안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력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감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게 되면 안정적인 감면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에 대해서 기재부는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게 될 때 재정 부담이 막대할 것이어서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시행일이 각각 개별 법안별로 다른데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현재 전기사업법 6조에 기본적인 전기요금 감면을 위한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고요. 또 현재 이 근거 조항을 기준으로 해서 약관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규정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혹한기·혹서기를 규정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폭염·혹한을 별도로 어떻게 정해야 될지에 대한 이견이 많기 때문에 폭염·혹한기에 특별히 더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으로 규정하기보다는 한전의 약관을 통해서 특별한 경우에 재량을 가지고 더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별도 규정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재정 지원 근거 규정과 관련하여서도 현재 정부의 원칙이 에너지바우처를 통한 비용 지원의 경우에는 재정 지원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요금 조정을 통한 부분은 개별 기업의 책임하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별도로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의견 다 주셨나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지혜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박지혜 위원** 사실 요사이 정말 더운 날씨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통풍도 잘 안 되는 그런 주거환경에 놓이신 분들, 장애인, 독거노인들이 더운 바람이 나오는 선풍기 하나에 의존해서 여름을 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년 온열·한랭 질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는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전년 대비 3.5배나 증가했고 사망자 3명 중 2명이 극빈층이라고 보고가 되고 있는 등 폭염이나 한파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 1만 명당 온열질환 발생률은 저소득층인 의료급여수급자에서 21.2명으로 고소득층 7.4명 보다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 때문에, 또 이런 상황이 2060년까지 전국 7개 대도시에서 예상되는, 폭염으로 인한 65세 이상 조기 사망자가 22만 2000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고 사회적 비용도 106조 원에 달한다, 사회적 비용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고연령층이나 실외 노동자들,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전기사업법을 통해서 전기요금 감면대상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서 전기요금 감면을 시행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공통으로 발의된 배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마 차관님도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사항을 한전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약관에도 규정을 할 수 있고 또 법적인 근거를 개별법에 각각 둘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 자료를 보더라도 일부 법에서는, 노인복지법이나 다른 법에서는 법에서 감면 대상을 규정한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법을 찾아야지만, 감면 대상이 여러 법에 산재한 그런 상황에서 개별법에서 찾아봐야지만 감면 대상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보다는 사실 전기사업법에서 어차피 법적으로 정해진 경우도 있는데 하나로 모아서 일률적으로 규정하면서 감면 대상 간의 형평성 문제 같은 것도 없도록 사전에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기사업법상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지금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더 강하게 할 수도 있지만 ‘감면할 수 있다’ 정도의 근거를 마련한 것인데 과연 이렇게 규정을 마련한 것이 제도 운영의 탄력성을 정말 저해할 정도로 우려되는 것이냐, 그 개별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을 옥죄는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에 감면 대상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향후 전기요금 감면 제도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은 제고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면 대상 간의 형평성 문제 같은 것들도 일률적으로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제고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잠깐만요.

말씀 중에 강승규 위원님이 새로 오셨거든요. 잠깐 인사말 부탁드립니다.

○강승규 위원 안녕하세요? 홍성·예산의 강승규 위원입니다.

제가 동해 석유·가스 시추 관련해서 정책토론회를 오래전에 잡아 놨는데 마침 오늘 법안소위와 겹쳐서 부득이 시작을 해 놓고 이렇게 참석이 좀 늦었습니다.

앞으로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지혜를 모아서 우리 산업에 좀 더 여러 가지 활력소가 되는 법안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혜 위원 제가 사실 제 의견을 말하는 형태로 끝내고 말았는데……

○소위원장 김원이 아, 그렇구나. 미안, 미안해요.

○박지혜 위원 예,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죄송합니다.

그러면 박지혜 위원님 계속 발언해 주세요.

○박지혜 위원 그런데 그런 의견을 감안하셔서 이렇게 정합으로써 제도 운영의 탄력성이 저하된다는 의견의 근거가 무엇인지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먼저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에너지바우처를 통해서, 재정 지원을 통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요금 조정은, 물론 정부가 약관을 인가함으로써 개입은 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의 권한으로 보는 것이 전 세계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국의 에너지 복지 제도의 운영 방식이 조금씩 상이합니다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요금 조정과 에너지바우처를 동시에 운영하다가 최근에는 요금 조정은 민간시장의 개입이라는 차원에서 종료를 했고요, 결국 에너지바우처 제도로 일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직접적인 방식이 도움이 된다는 차원의 제도 개편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온열질환자 말씀을 했습니다만 영국에서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조사한 결과는, 요금 조정이라든지 단순히 비용 지원을 가지고 기본적인 에너지 여건이 상승되지는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나라나 비용 지원과 동시에 여러 가지 효율 혁신이라든지 단열 지원이라든지 생활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더 촘촘한 지원을 위해서 현재 요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금 조정의 경우에 기본 원칙은 요금 조정을 하고 그 요금 조정의 부족분을 정부에서 재정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나 요금 조정 뒤에는 교차보조를 통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요금 조정을 통해서 메꾸는 형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간은 요금 조정이라는 것이 정부의 권한이 아니라 기본적인 기업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제가 경직성을, 요금 조정에 있어서는 요금 조정 자체를 법안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하기에는 좀 과도한 개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저희가 전기사업법 6조(보편적 공급)이라는 그 조항을 통해서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라든지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한 전기의 보편적 공급 의무를 전기사업자에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 근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근거 조항을 통해서 기업에 재량권을 좀 더 인정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다른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승규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으니까……

아, 아까 허성무 위원님이 발언 신청을 먼저 해 놨었습니다.

허성무 위원 듣고 그다음에 박형수 위원님 그다음 강승규 위원님 이런 순서로 갈까요?
허성무 위원님.

○허성무 위원 2차관님, 설명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안들을 여러 의원들이 내게 된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전기요금이 작년, 재작년, 세 차례나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오를 때 에너지 약자들, 그러니까 바우처라든지 이런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회적 배려 계층들이 그 변동에 맞게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산업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사회적 배려 계층들의 바우처라든지 배려도 같이 동시에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2023년에는 줄어드는 경향까지 있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률로써 규정하고 법률로써 보장해 주지 않으면 이게……

2차관님 소관 내에 두 부서가 다 있잖아요. 가격을 정해 주는 부서도 있고 또 사회적 배려를 해 주는 부서도 있고 다 있지만, 차관님 소관 부서 내에서 다 하지만 이게 잘 안되고 있고 연동도 안 된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해서 법률로 강하게 규정하고 배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지금 보편적인 생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2차관님께서 이것을 조금 전향적으로 받아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만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게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금 인상과 관련하여서는 저희가 사실은 요금 인상 요인을 100% 흡수하지 못해서 현재 한전은 전체 기준으로 보면 200조 이상의 적자를 가지고 있고요, 별도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금 40조 이상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200조 이상의 인상 요인을 인상을 못 하고 흡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그만큼 많이 못 올린 게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너지 바

우처는 저희가 기존의 30만 원대, 40만 원대 지원에서 에너지요금이 인상된 것을 감안해서 최근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69만 5000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상 지원의 근간은 에너지바우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약자라는 개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 130만 가구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그 가구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요금 조정을 통한 간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계속 들려서 말씀드리는 것은 원칙의 문제가…… 요금 조정을 100% 못 한 상황에서 또 요금 인상 유예라든지 바우처 예산 증액을 했습니다만 요금 조정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기업이 정하여야 될 영역이라고 보고요.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인상된 것만큼 결국은 다른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사실은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대한 내부적으로 흡수하는 차원에서 현재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385만 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은 숫자는 아니고요. 현재 1년에 한 680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무작정 늘리고 싶지만 늘린 만큼 결국은 다른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부담 전가가 안 됐을 시에는 결국은 한전의 적자로 환원이 되기 때문에 그 말은 다시 또 요금 인상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원이 조금 더 필요하다면 직접적인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그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을 넓혀서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에너지바우처 예산을 추가적으로 더 많이 늘려 주시면 재정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잠깐만요.

먼저 박형수 위원님이 요청해 주셨으니까 박형수 위원님 먼저 발언하시고요. 그다음에 강승규 위원님도 발언 신청하셨고 그다음 서왕진 위원님 하시지요.

발언 순서는 이렇게 신청한 순서대로 하는 게 좋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부분을 정리하면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좀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법안들이 발의된 이유는 지금 취약계층들에 대해 에너지요금을 지원하자는 취지, 여기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십니다. 그런데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부분들을 여기다 한꺼번에 규정하면 편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취지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지금 이렇게 법률로 규정을 했을 때, 물론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원칙의 문제가 훼손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지…… 아까 전기사업법 6조(보편적 공급)이 근거 규정이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박약한 것 같아요, 그 논리는. 그것은 보편적 공급이라는 원칙을 규정해 놓은 것이지 그게 에너지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라고 보기에는 조금 약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규정하고.

그리고 방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정할 것인지는 차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에너지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 전기법에 규정을 해 놓고 전기사업자는 감면을 합니다. 그러면 감면하고 난 다음에 그 적자 폭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적자가 200조 났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요금을 인상해야 되는데 요금 인상하면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해 줬다면 차라리 그건 재정으로 메우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그 재정을 메우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지금 에너지바우처를 얘기하시는데 저는 기본 구조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도 노인복지법인가요 거기에도 규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법률에 산재된 경우도 있고 또 약관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에너지 취약계층들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지원하는 게…… 일목요연하게 법으로도 정리를 하고 에너지바우처도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야지 실제 취약계층들한테 지원될 수 있다 그런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산정을 해서 다음 회의 때, 종합적인 모양을 가지고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해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좀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법안 개정하는 이것 하나를 가지고 이 개정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나 이것만 따질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법안 개정 또는 예산 지원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는 그걸 차제에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이런 걸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준비를 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왜 요금 조정에 민감하게 요금 조정은 기업의 권한이라고 말씀드리느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요금 자체를 건드린 건 아니고요 일본의 경우도 에너지요금이 올랐을 때는 오히려 보조금을 투입해서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그 계층에 대해서 정부 보조금 비율만큼 가격을 인하해 주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요금 자체는 기업의 권한이고 여러 가지 수요나 공급을 감안해서 책정된 요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요인을 범상으로, 요금 조정 자체를 범상으로 강제하는 조항을 두는 것은 기본적인 시장질서에 문제가 있다라는 원칙론적인 문제를 말씀드렸고요.

에너지 복지가 각국별로 사례는 좀 다릅니다만 대부분 직접적인 재정 지원의 형태로 바뀌고 있는 추세는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 요금 조정의 근거는 사실은 미국의 개별 주에서……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일부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일부 주에서 요금 조정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요금 조정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Public Purpose Program'이라고 해서 감면된 비율만큼 일반 소비자에게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그 근거만큼 요금표에 별도로 표기를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감면된 부분만큼 부담해야 될 사람들의 명확한 책임 소재를 규명해 놨기 때문에 이 제도가 운영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요금 감면을 규정하면서 별도로 이

요금 부과를 누구한테 해야 될지도 정하는 것이 가장 정공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방법은 사실 조금 더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저희가 명시적으로 감면된 부분만큼 요금 인상으로 100% 반영을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뒤에 도시가스법도 나옵니다만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부담 못 한 부분만큼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있고 한전의 경우에는 재정 적자로 환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거는 저희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에너지 복지를 어떤 형태로 지원할지에 대해서 위원님들 포함해서 좀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박형수 위원님까지는 질의가 끝났고 그다음에 강승규 위원님 질의하고……

○정진욱 위원 저도 예약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서왕진 위원님 다음에 정진욱 위원님.

○이재관 위원 저도 예약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잠깐만 기다리세요. 일단 그러면 강승규 위원님 먼저 하시고, 고동진 위원님 마지막 드릴게요.

○강승규 위원 박주민 의원님 등의 법안 발의 취지는 십분 이해가 갑니다. 정말 올해 덥고 이런 혹서기, 혹한기 등에 취약계층의 에너지 문제는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 등을 법에서 확실히 보장하는 것이 어떠냐는 발의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차관님이나 박형수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주머니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에너지 가격이, 요금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아무리 공공요금이고 거기에 정부가 관여한다더라도 기본적으로 시장의 수급에 의해서 결정돼야 되는 요금체계가 특정 계층에 대해서 복지 차원에서 배려되는 문제 등을 가지고 혼용을 해 버리면 시장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복지가 혼용이 돼서 나중에 정말 탄력성·신축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이런 부분 등이, 이 부분만 아주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반영한다 하더라도 법의 체계가, 법률의 체계가 이렇게 상위법에서 계속 뭔가를 종합적으로 또 근본적으로 또는 포괄적으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상위법으로 움직일 때 법률체계가 굉장히 다른 부분에서도 혼선을 빚을 것이다. 그래서 그게 문화바우처도 그렇고 다양한 여러 가지 복지 분야 취약계층이나 어떤 특수한 맞춤형 복지가 필요할 때 그런 부분에 이 법률체계가 또 악선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습니다.

그래서 박형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기후환경 변화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도 기본적으로 변해야 된다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법령체계에서 제대로 담아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 등을 좀 더 정비해서 숙성된 이후에 이 법안을 다뤄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답변…… 따로 그냥 본인 의견만 내신 건가요?

○강승규 위원 예.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정부 측에서 별도로 답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에 서왕진 위원님.

○서왕진 위원 조국혁신당 서왕진입니다.

대체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안은 현실적 필요성, 시급성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은 없는 것 같고요. 문제는 기후변화 시대에 혹한이나 폭염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고통받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또 에너지 이용의 어떤 권리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거냐 하는 정책적 방안을 찾는 것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나 프로그램 자체가 미진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는 차원에서 아마 법 개정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체로, 특히 한전이 약관을 통해서 요금 감면을 그때그때 하고 있는 부분이 제도적으로 장치는 있지만 여러 가지 한전의 재정 적자 문제라든지 아무래도 소극적, 보수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 또 혹한이나 폭염기 때 특별하게 더 지원해야 될 대상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에서 취지로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것이 지금 이 법 개정을 통해서 취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 현재보다 더 개선된 방안들을 찾아내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생각은 듭니다. 차관께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현재 에너지바우처 제도하고 한전 약관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이 전기사업법에 이렇게 대상을 특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충분하게 정말 변화를 달성할 수 있을 거냐, 그다음에 한전이라고 하는 기업의 요금체계 자체를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장 적절한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산자부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에너지법 16조에 따르면 에너지 복지 사업을 죽 진행하고 있는데 장관은 3년마다 그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돼 있는데 그 작업이 현재 계속 진행이 되고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에너지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사실은 전달체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나라가 등유를 쓰는 계층, 연탄을 쓰는 계층 또 도시가스를 쓰는 계층이 구분돼 있어서 그 에너지원별로 대상 계층이 좀 차이가 나 있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영유아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이 붙다 보니까 전달체계에서 많이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현재 내부적으로 전달체계를 단순화하고 혜택을 받는 사람이 최소한의 절차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제도를 개편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개편안을 마련하는 대로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전달체계의 한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이번 법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상 자체가 지금 빠져 있거나 사각지대가 커서 그 대상 자체를 법에 아예 특정하자 이런 제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과 관련해서 현재 한전 약관을 통해서 감면을 하는 거라든지 에너지바우처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하고 현재 법안에 올라와 있는 대상을 특정하는 것하고 비교해서 차이나 특별하게 더 보완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을 혹시 검토해 본 내용이 있으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저희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현재 법안에서 제시해 주신 것보다 현 상황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약관을 통해서 지원하는 계층이 더 넓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5인 이상 대가족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출산이 문제다 보니까 출산 가구도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생명유지장치를 활용하시는 가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안에 제시된 것보다 약관을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약관은 저희가 승인을 통해서 바로바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가 늘어나게 된 계기는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여론이 제기됐을 때 약관으로 바로 수용을 하면서 저희가 요금 할인이 들어갔었거든요.

○**서왕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약관을 통해서 그렇게 감면을 한다 그러면 감면 조치에 대한 한전의 줄어드는 수익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보완을 하고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현재로서는 원칙은 교차보조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자 요인을 궁극적으로는 요금 인상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후환경 요금 같은 경우는 명시적으로 전기요금표에 표기를 함으로써 자동 인상하는 방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복지할인은 아직도 그런 제도를 도입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조금 더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도입을 못 했는데, 이 요금 할인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주에서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Public Purpose Program'이라는 별도의 제도를 통해서 기후환경 요금과 마찬가지로 복지할인 요금도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부분이 앞에 말씀드렸듯이 별도의 요금 책정에 산정식으로 들어가게 돼야 복지할인의 규모도 더 넓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것도 정답은 있는 게 아닙니다. 국가별로 이 방식을 폐지하고 재정 지원으로 일통한 국가로 가는 것이 그래도 현재 트렌드에 맞고요. 앞에 영국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서왕진 위원** 조금 짧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영국의 조사에 따르면 궁극적인 지원은 결국은 생활여건 개선이 더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서왕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기사업법안에서 제가 아주 세세한 내용까지 다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게 폭염과 혹서기에 문제가 되는 취약계층을, 빠져 있는 대상을 좀 더 제대로 특정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 그다음에, 특히 한전의 약관을 통해서 감면하고자 하는 정책 자체가 한전의 여러 가지 현실적 이유 때문에 보수적이거나 소극적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을 담보함으로써 그것을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

두 가지로 저는 크게 이해가 되는데 전자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바우처나 약관을 통해서 제공하는 것이 더 광범위하고 폭넓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더 개선된다라고 딱히 이야기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는가 그 부분은 한번 팩트 자체를 좀 따져 봐야 될 것 같고요. 재정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될 만큼 사실은 차관님 말씀은 가격을 인상해서 그 부분을 대체한다고 하셨는데 말처럼 그게 바로 현실화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정책적 방안들을 좀 더 분명히 하는 것,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법 개정 문제뿐만 아니라 저는 기본적으로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 필요나 이유에 맞춰서 전기요금을 좀 더 현실화하거나 인상하는 부분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되지 않고 특히 취약계층의 문제 때문에 늘 항상 그 부분을 현실화시키지 못한 채로 요금 감면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전기요금은 오히려 현실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에너지바우처든 어떤 형식이든 간에 에너지 복지체계를 훨씬 더 강화하는 방안들을 찾아 나가는 정책적 접근을 오히려 좀 더 심도 있게 저희는 다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내용을 좀 찾아서 법안 개정을 통해서 그걸 담아낼 수 있다면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하는 게 좋다,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서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순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손 안 드셔도 제가 다 써 놨으니까요.

다음에는 정진욱 위원입니다.

다만 지금 질의하실 분들이 다시 또 재질의하시고 싶은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토론을 할 때 압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진욱 위원** 압축해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왕진 위원님께서 발언 말미에 말씀하신 전기요금 복지와 아울러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이야기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마는 계속 전기요금을 끓어 두는 방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전기요금은 요금대로 올리면서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 복지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차관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거나 또는 머뭇거릴 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정책적 정향성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금 조정이 한전의 권한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정진욱 위원** 시장질서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전기시장일 텐데요. 지금 우리 전기시장이 경쟁시장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경쟁시장을 지향은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는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경쟁시장을 지향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지향하고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기를 파는, 물론 지금 현재 한전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물론 각자가 생산한 것을 판다는 의미가 아니고 전국적인 전기 배급망의 공급자를 복수로 할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전기시장에 있어서 경쟁시장의 지향이라는 개념은 최근에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복수의 사업자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수요 신호를 가격에 어떻게 잘 반영하는가가 경쟁시장의 가장 큰 화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앞에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정진욱 위원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이 강화되면서 발전 부분의 경직도가 강화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바뀐 개념이 과거와 같이 단순히 사업자 수가 늘어나고 진입장벽을 깨고 이런 게 경쟁시장의 개념이 아니라요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수요를 판매가격에 잘 반영할 수 있는 체제를 어떻게 갖추느냐가 경쟁시장의 가장 큰 화두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정진욱 위원 잠깐만요.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지요. 지금 저는 공급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수요를 반영해서 거기에 따르는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꾸는 것을 공급시장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공급 부분은 지금 많은 부분이 자유화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기업에서만 공급을 하고 있지 않고……

○정진욱 위원 아니아니, 잠깐만요. 제가 지금 공급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발전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들에게 직접 전기를 배분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의 공급자를 이야기하는데 논의를 자꾸 섞어서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알겠습니다. 지금 판매사업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현재는 송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는……

○정진욱 위원 저 판매사업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 갔는데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위원장 김원이 차관님, 좀 들으시고 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욱 위원 그러면 에너지시장이 일반적 시장하고 다르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정진욱 위원 한전이 사기업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공기업입니다.

○정진욱 위원 그러면 에너지 공급에서 빈곤층에게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게 법에 규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알고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어떤 법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에너지법에요 기본적인 보편적 공급에 대한 정부의 책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국가, 지자체 외 누가 또 그런 의무를 지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에너지사업자도 책무를 지게 돼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그렇습니다. 4조 5항에 보면 에너지공급자가 바로 그런 책무를 지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맞습니다.

○정진욱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차관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느끼는 건 그런 책무가

없이, 기여 의무 없이 한전이 복지라든가 또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말씀하고 계셔서……

전기사업법은 에너지와 관련된 모범인 에너지법이 상위법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정진욱 위원**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정진욱 위원** 그런데 왜 에너지가 공공재고 한전이 공기업인데 에너지 복지가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그리고 시혜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정진욱 위원**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매해 운영 규모가 한 3조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지금 박주민 의원안에 보면 전기요금 감면에 필요한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 부분은 이미 그 앞 조에 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의 발전과 기반 조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는 목적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기반기금의 조성 자체가 전력산업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하라고 만든 기금이기 때문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과연 복지할인에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정진욱 위원** 물론입니다.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지금 재정이 초부자 감세로 인해서 100조 정도 평크가 나 있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정진욱 위원** 어디서 돈을 가져다 해야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전력산업기반기금도 현재 모든 소비자들의 요율에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랑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제가 외국의 입법 사례를 말씀……

○**정진욱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우리 국가가 거둬들이는 세입은 전부 세금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정진욱 위원** 재정의 모든 재원이 세금인데 전력기반기금이 세금과 같은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문제인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아니, 문제가 아니라……

○**정진욱 위원** 국민 접주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아니, 전력기반기금도 부담금을 통해서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하는 것 자체도……

○**정진욱 위원** 뭐든, 세금이든 부담금이든 그것을 통해서 재정의 기반 예산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부당하게 걷어서 한다거나 국민들이 내지 않아야 될 것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러면 제가 오해가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

고요.

제가 앞에 왜 에너지바우처 얘기를 말씀드렸느냐 하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사실은 저희가 프랑스 제도를 본떠 와서 기반기금을 조성했습니다. 다만 프랑스에서는 현재 기금을 폐지하고 바우처 제도로 통일을 하면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기반기금을 폐지하고 국세로 전환을 하면서 바우처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법의 기본적인 원칙을 저희가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요금 조정이라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가 아니고 정부의 책무는 복지제도의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바우처로 가는 것이 정공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진욱 위원 그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다만 요금 조정의 근거가 우리한테 없는 것처럼 그리고 한전이 그런 요금체계를 만들어 내는, 특히 요금 복지를 하는 것들이 근거 없는, 과도하게 사기업의 경영을 간섭하는 것같이 차관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맨 처음의 취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 위원님 발언을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정진욱 위원 잠깐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하지 않을 때 저는 단지 법률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떤 정향성을 가지고 있느냐도 저는 문제 속에 있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에너지법 4조 5항에 충실히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위원장님, 조금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김원이 예, 짧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오해가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현재 기본 지원 조항은 전기사업법 6조에 에너지법을 받아서 보편적 공급이라는 근거 조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근거 조항 6조를 근거로 약관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우리나라의 지원 수준이 외국에 비해서 적느냐, 많느냐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도가 개편되기 전의 프랑스의 경우에는 전기요금 지원을 통해서 1년에 70유로까지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마다 기후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이 얼마가 적정하느냐를……

○소위원장 김원이 차관님, 마무리해 주세요.

○정진욱 위원 차관님, 저도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한전이 가지고 있는 요금 조정의 자율성이 이런 게 법률을 제정하면 제약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법률은 최소한을 정하는 거고요 한전은 그 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약관을 통해서 언제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하여간 지금 전기사업법 관련한 논의가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처리해야 될 법이 17개예요. 이제 우리가 3번부터 6번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상기해 주시고요.

말씀 주시는 분들, 이재관 위원님, 김동아 위원님 그다음에 고동진·박지혜·허성무 위원님…… 고동진 위원님부터는 재차 두 번째 질의 들어가시는 건데 시간 안배를 좀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오늘 17개 다 못 하고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밤늦게까지 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고 위원님들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관 위원** 위원장님 주문 취지에 맞게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차관님 말씀을 죽 들으면서 나름 정리된 것은 어떻게 정리가 됐느냐 하면 에너지복지 차원의 대상자들에 대해서 요금 감면이라든지 하는 그런 시책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것은 지금 현재 한전의 약관을 통해서 그 대상자들한테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나가면 될 것 같다, 기업의 자율성이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법에다가 근거를 두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정리가 됐거든요. 맞으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이재관 위원** 그런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위원님들 간의 공감이 뭐냐 하면 그 대상자들한테 국가로서의 책무, 복지로서의 책무 그 원칙을 천명하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그런 원칙을 준수하는 방법을 채택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차관님은 2조의 보편적인 의무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조항을 몇 번 읽어 봐도 의무라고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도서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이지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까지 그것을 하나의 일반 규정으로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선 하여튼 그렇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한전에서 그 책무를 하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정부의 일종의 보완대책은 가지고 있는 건가요? 말씀드리면 전기요금 할인 비용을 하기 위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앞에 말씀드렸듯이 복지할인은 기본적으로 차후 요금 인상에 반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재관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우선 한전의 약관에 의한 방침에 의해서 감면을 하게 되는데 추가적으로 한전의 약관에 의해서 커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최후의 보루 수단으로서의 예산, 그 예산을 확보하는 게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러니까 현재 복지제도를 설명드리면 에너지바우처하고 요금 할인을 중복해서 지원이 가능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복지제도를 설계할 때 바우처로 커버되는 부분과 요금 감면을 통해서 커버되는 부분을 구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그래도 요금감면 제도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빈곤층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최소한의 가구에 대해서 더 많은 폭넓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추가적인 계층에 대해서 요금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관 위원** 우선 여기까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아 위원님.

○**김동아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한전 감면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저희가 요금, 약관에……

○**김동아 위원** 바우처 말고요 요금 감면.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감면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동아 위원** 저는 정부에서 감면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 근본 목적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에너지바우처니 시장질서니 이런 문제는 사실은 본질과 상관없는 문제라고 보이고요. 이게 법에서 보편적으로 규정을 이렇게, 이런 사업자에 대해서 법에 의무를 규정하는데 시장질서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요금은 기본적인 시장의 선호 가격 신호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김동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전에서 약관을 규정하는데 그게 시장에 따라서 규정된다는 것은 저는 좀 뜯구름 잡는 얘기 같다는 생각이고. 그러면 지금 한전에서 시장 판단에 따라서 감면한 것을 향후에 임의적으로 철회하고 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이미 감면 약관을……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아니, 약관제도를 정부에서 인가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못 하고요.

○**김동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오히려 이런 사태가 발생했거나 취약이 발생했을 때 정부나 국회에서 한전을 압박해 가지고 약관에 넣으라 하는 것보다 차라리 보편적으로 법에 규정을 하고 정부에서 지원할 예산을 규정하는 게 법의 정합성에 맞다라는 생각이지 무슨 이런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한전을 닦달해서 약관에 감면을 규정하고 정부에서는 지원도 하지 않고, 이게 오히려 시장질서를 더 교란하고 부적절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정부 차원에서 결국은 한전에 예산 지원을 못 해 주겠다라는 의미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법을 같이 통과시켜 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의견입니다. 이게 토론을 해 봤자 정부 측에서는 사실 감면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못 해 주고 에너지바우처 사업으로 좀 생색을 내고 싶다 이런 게 내심이 아닌가 저는 오늘 토론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발언 끝났습니까?

차관님, 질문 하나 할게요.

복지할인제도 한전 약관으로 하고 있는 게 1년에 6800억 정도 들어가요?

○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렇습니다.

○ **소위원장 김원이** 거기에 정부 예산 지원하는 게 있어요?

○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없습니다.

○ **소위원장 김원이** 없지요? 그런데 그 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약관을 정할 때 한전 스스로 정했나요?

○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아닙니다. 정부가 승인합니다.

○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가 정해 주는 거지요, 결국?

○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 **소위원장 김원이** 결국 정부가 책임져야 될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혹은 지역적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 안지고 한전한테 떠넘긴 것 아니에요?

○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아니, 저희가……

○ **소위원장 김원이** 아니, 결국 사회적 약자들, 여기서 하고 있는 다문화,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 대가족, 출산가구, 사회복지시설, 이 사람들 우리 국민 아닙니까? 왜 한전이 책임져야 돼요?

○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우리 국민……

○ **소위원장 김원이** 그 사람들에 대한 전기료를 왜 정부가 책임지지 아니하고 한전한테 넘겨요?

○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아니, 그래서 그것을……

○ **소위원장 김원이** 이 법안의 개정 취지는 지금까지 정부가 책임지지 아니하고 계속 한전한테 떠넘겨 가지고 차곡차곡 한전에 적자로 쌓인 부분을 이제는 돌려서 정부가 책임지자라고 하는 취지예요. 거기에 대한, 취지에 대한 발언을 해 주셔야지 계속 어떨 때는 정부가 자유시장에 맡겨야 됩니다라 그리고 어떨 때는 약관이 어쩌고저쩌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책임 안 질 때는 한전한테 미루고, 정부가 책임져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정부가 또 감당해 줘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한전으로 미루고, 한전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하고 있으니까 안 하고.

하여간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또 사회자가 너무 나서면 그러니까.

고동진 위원님 차례인데요 양해해 주시면, 서일준 위원님이 한 번도 발언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하시고 고동진 위원님은 재질의니까 양해를 좀, 서일준 위원님 먼저하시는 게 어떻겠……

○ **고동진 위원** 저도 처음 질의입니다. 저도 처음 질의예요.

○ **소위원장 김원이** 아니, 아까 처음에 안 하셨나?

○ **고동진 위원** 안 했어요.

○ **박형수 위원** 다른 것 했겠지.

○ **서일준 위원** 먼저……

○ **고동진 위원** 아니에요. 먼저……

○ **소위원장 김원이** 아, 그렇구나. 그러면 고동진 위원님 하세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아까 반도체 관련이었구나. 먼저 그러면 하고 서일준 위원님, 다른 분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일준 위원** 제가 그러면 먼저 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실래요?

○ 서일준 위원 예.

차관님, 특례할인은 뭡니까?

○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특례할인은 별도의 계기에, 과거 저희가 한영 FTA 같은 것 할 때 도축 시설에 대해서 특례할인을 한 경우가 있고요. 또 ESS 보급할 때 가정용 ESS 특례할인을 한 경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계기에 별도 특례할인제도가 도입된 경우가 있습니다.

○ 서일준 위원 초중고교, 유치원도 특례할인인데 왜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까?

○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한때 기숙사 시설이 여름에 굉장히 덥고 겨울에 춥고 이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필수적으로 기숙사에 들어가야만 되는 시설에 대해서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해 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서일준 위원 기숙사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실에 한다는……

○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다음에 짐통 교실도 문제가 돼서 교실에 대해서도, 초중고에 대해서도 별도의 할인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서일준 위원 할인도 안 하면 에어컨 안 텁니까? 난방 안 합니까? 초중고교의 전기료는 누가 내는 거지요?

○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제 기억에 따르면 교육보조금을 지역 거기서 받는 총액 범위 내 비용 내에서 쓰기 때문에, 더 덥다고 예산이 증가되지 않아서 비용을 할인해 줘야 된다라는 논리로 그때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일준 위원 보니까 미국종합처리장도 있는데요 여기는 또 왜 할인을 해 줍니까?

○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말씀드리면 그때도 저희는 반대했습니다만 한중 FTA 추진 과정에서……

○ 서일준 위원 할인 안 해 주면 적자가 나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아니, 그건 아닙니다만 미국처리장이 당시 농사용 요금에서 제외되어 있었는데 한중 FTA 처리 과정에서, 제 기억에 따르면 보다 폭넓은 우리 농민, 농업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일준 위원 천일염은요?

○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제 기억이 정확지는 않습니다만 그때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서 천일염도 마찬가지로 농사용에 준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천일염 자체가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농업이나 어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논란이 또 마찬가지로 농업·어업 종사자분들에서 일어나서 천일염만 떼서 지원을 해 주자라는 차원에서 특례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일준 위원 이게 약관에 다 들어 있는 거지요? 도축장도 마찬가지고. 그렇지요?

○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렇습니다.

○ 서일준 위원 저는 할인제도에 대해서, 복지할인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특례할인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전기요금 할인 비용이 작년도에 6770억 맞습니까?

○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 서일준 위원 이게 복지할인, 특례할인, 재난지역 특별할인 다 포함된 겁니까?

○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복지 할인만 6770억입니다.

○ **서일준 위원** 복지 할인만 6770억 원이다?

○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 **서일준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 질문 과정에서 답이 나오던데 정부에서 전혀 지원 안 합니까?

○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 **서일준 위원** 정부에서 전혀 지원 안 하고 있어요?

○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외국의 일반적인 제도와 운영 사례는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특별한 특례할인이나 별도의 지원에 있어서는 별도의 요금으로 환원해서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 **서일준 위원** 그러면 특례할인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 전혀 없습니까?

○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없습니다.

○ **서일준 위원** 전혀……

○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로당하고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요. 경로당하고 사회복지시설은 한전에서 일부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고요, 거꾸로 복지부 예산에 경로당 전기요금 지원 예산 또 사회복지시설 지원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소위원장 김원이** 질문 끝나셨나요?

○ **서일준 위원** 아니요, 아니요.

○ **소위원장 김원이** 마무리 좀 해 주시지요, 일단.

○ **서일준 위원** 저는 이게 약관을 가지고 해 놔도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다시 저 같은 의문을 품는 의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국민 생활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법률에 규정하면 좋겠지만 좀 탄력적으로 하려면 약관으로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소위원장 김원이** 서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고동진 위원님 하시고요. 나머지 박지혜 위원님하고 허성무 위원님은 재질의 요청하셨는데 일단 먼저 고동진 위원님 하시지요.

○ **고동진 위원** 이게 법률 취지가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하고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정도를 마련하는 거지요, 취지 자체가?

○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 **고동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의무규정도 아니고 임의규정인데 정부에서 볼 때는 전기요금 사항을 법률에 정하면 어쨌든 탄력성이 좀 저하가 된다라고 하는 그것에 가장 큰 이유가 있지요?

○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 **고동진 위원** 그런데 감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규정인데도 그렇게 탄력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겁니까?

○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제가 앞에 첫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복지 제도는 어느 나라나 지금 제도의 개편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재정 지원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방향이라고 제

가 말씀을 드리고요.

○**고동진 위원** 그래서 차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가장 큰 게 결국 사업자인, 기업인 한전, 물론 공기업이지만 요금 인상이 쫓아올 수 있고. 그렇다면 한전이 이런 거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한전에 정부 지원의 어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으로 가면 큰 문제는 없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 보조금을 굳이 여기 주지 않고 에너지바우처에 줘서 대상을 늘리는 게 오히려 정공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동진 위원** 잠깐, 지금 왜냐하면 에너지바우처라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진짜 취약계층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아까 차관께서도 말씀하신 게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 전기도 있고 연탄도 있고 여러 가지 계층이 있으니까 에너지바우처라고 하는 게 좀 한계가 있다고 차관께서도 말씀하신……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래도 그것을 개편해서 재정 지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저는 정공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왜 이것을 법에 넣는 것을 반대하나 하면 결국은 이것은 사회적인 논의, 위원님들의 논의를 통해서 에너지 복지의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그것으로 가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동진 위원** 그런데 저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 과정의 중간 경과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약관으로 폐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 상황에서 이게 법에 들어가면……

○**고동진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잠깐, 시간이 너무 지나가면 안 되니까. 그게 법적 근거 정도 마련하자라고 하는 취지인데 이것마저도 수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좀 안 가요. 왜냐하면 일반, 진짜 취약계층에 있는 국민들이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게 많은 의원들이 발의를 한 건데라고 하는 게 걱정이 되고.

또 하나는 산자부가 아까 말씀하신 전기사업법 6조 얘기한 것, ‘보편적 공급에 이바지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선언적 규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래도 그것이 근거 규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산자부장관이 보편적 공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행정규칙으로 정해야 되는데 이것 확인해 보니까 위임 행정규칙이 디테일하게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그건 알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앞에 말씀드렸듯이 사업자가 가진 의무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이걸 근거로 약관에 넣고요, 그 약관에 대한 승인을 정부에서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동진 위원** 저는 이게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제규정도 아니고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정도 규정인데도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솔직히 이해는 안 갑니다마는 아까 박형수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미비한 게 있다라면 그걸 좀 보완을 해서 한 번 더 토의하는 게 맞지 계속 이런 식으로 평행선 가다가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발언 끝나셨나요?

○**고동진 위원** 예.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에 의견을 묻는 겁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계신 여야 법안소위 위원님들이 의결하면 법안은 성안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운영해야 되는 정부의 입장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으니까 정부의 입장을 묻는 거고요. 그래서 타당한, 정부의 입장을 우리가 수용하느냐 마느냐는 위원님들의 판단이지 정부는 정부 측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너무 정부 측의 의견을 절대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차관님, 에너지바우처를 거의 금과옥조처럼 말씀하시는데요. 바우처가 에너지 말고도 여러 분야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실패 사례가 겁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바우처가 무슨 이것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풀릴 것 같은 전가의 보도처럼 말씀해 주시는 것은 삼가 주시고요. 그리고 이미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되는 바우처가 실패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우처 운영은 어느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조 축이나 이렇게 운영되는 거지 그것을 주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차관님도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참고로 그러면……

○**박형수 위원** 바우처에 대해서는 왜 또 그렇게 싫어하십니까?

○**소위원장 김원이** 아니, 아니요. 전 좋아해요. 그런데 왜냐하면 차관님이 바우처 제도가 거의 금과옥조, 전가의 보도처럼 말씀해 주셔서 너무 그렇게 빠져드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것도 평크가 난다는 거예요. 아까 고동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크가 분명히 나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갖고 제도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라는 태도를 고동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거든요. 그 말씀 드린 거고.

다음 또 위원들 질의 있으니까, 차관님 하실 말씀 많을 텐데, 박지혜 위원님하고 허성무 위원님 얘기 듣고 이 문제는 좀 일단락을 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박지혜 위원님 좀 짧게 해 주세요.

○**박지혜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도 특례할인을 서일준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요. 특례할인도 그렇고 복지할인도 그렇고, 그러면 그런 약관을 수립하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한전이 먼저 들고 와서 이렇게 할인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말씀드립니다만 어쨌든 약관이 재량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여론의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약관을 작성하고요, 그 약관에 대해서 정부가 승인해 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박지혜 위원** 약관을 작성할 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앞에 미곡, 천일염 여러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 기억에 따르면 사실은 국회에서 많이 논의가 돼서 거꾸로 약관에서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러니까요. 국가나 산업부나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아마도 한전에게 이렇게 할인해 줘라 얘기해서 그에 맞춰서 약관을 작성하는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맞습니다.

○**박지혜 위원** 앞서서 이런 제도를 법에 규정하는 것이 사업자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법적인 근거 없이 정부가 사실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 할인을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김동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법에다가 명확하게 기준을 만들고 법으로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약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그게 법적으로도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질문이 하나 있는데, 에너지바우처의 재원은 무엇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에너지특별회계입니다.

○**박지혜 위원** 에너지특별회계는 어디서 나오는 돈으로 만드는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우리 에너지 수입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담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러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혀 사용하지 않나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목적 조항에 에너지 복지가 빠져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허성무 위원님도 짧게 좀,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재질의니까.

○**허성무 위원** 저는 짧게 질문과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차관님 방어논리로 현란하게 많은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제가 따라가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사실은 지난 세 번의 요금 인상 과정에 요금은 급격하게 그리고 아주 급속하게 인상 결정이 나는데 거기에 비하면 차관님 지금 전가의 보도로 이야기하시는 에너지바우처 이 비용은 전기요금 인상만큼 따라가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전기요금 인상보다 더 많이 증가됐습니다, 바우처는 사실.

○**허성무 위원** 예를 들면 2022년에 6800억이 나갔어요, 바우처 할인액 전체가. 그런데 23년에는 6770억이 나가서 30억이 오히려 감액이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22년도가 급격히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어쨌든요. 이런 것을 보면 사실은 이게 더 비탄력적일 수 있다는 거지요. 요금이 급격하게 올랐는데 바우처 예산편성이 이건 1년 단위로 예산이 편성돼야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비탄력적이다.

혹시 이것을 위해서 예비비를 써 본 적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비비도 일부 저희가 에너지바우처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부. 물론 전반적으로는……

○**허성무 위원** 일부 들어간 게 있으면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어쨌든 차관님이 방어를 위해서 여러 좋은 말씀들을 주시지만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더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고 오히려 법으로 제도로 정확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미국 사례를 또 이야기하시면서 미국 일부 주에서 이렇게 요금을 깎아 주거나

바우처를 주기로 했을 때 그걸 부담하는 다른 대상을 명확하게 한다든지 이런 걸 하신다 했는데 제가 과문해서 그것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차관님 발언 오늘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면서 한전 약관에 따르면 380만 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다양한 혜택을 보는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정확한 혜택의 숫자 이런 것도 좀 주시고.

바우처로 130만 명이라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가구입니다. 가구 수입니다.

○**허성무 위원** 가구 수, 그것도 좀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방어논리를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수많은 애를 쓰시고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약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게 저희들의 일반적 생각이고 그걸 위해서는 법에 어떤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 주장으로 저희들이 이 법을 주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발언 끝나셨나요? 그러면 이 법안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몇 가지……

차관님, 그동안에 정부가 예를 들어서 이 약관 만들 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확인했는데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재난 상황이나 이럴 때 한전의 약관을 계속 보완해 왔거든요. 보완을 할 때 한전만의 판단으로 하지는 않았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우리 국회의 요청도 있었고 정부의 요청도 있었고 이런 정치적 판단들을 하는 속에서 사실은 그게 결과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될 문제들을 한전한테 떠넘기는 구조였단 말이지요. 그런데 반면 요금을 결정하는 권한은 또 한전한테 안줬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고 한전에 200조 적자가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 문제는 지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책임, 정부 책임을 분명히 하자라고 하는 취지와 한전에게 떠넘기던 그 책임을 이제 정부가 가져오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논의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정부가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 하나 주문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특례 조항에 재난지역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약관이 되어 있잖아요. 문제는 재난지역이 옛날에는 부분적이고 특수한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전면적이고 일상화되고 있어요, 재난이. 전국화되고 있고. 왜냐하면 기후위기 상황에서 지금 올여름 보지만 재난 상황이 아닌 곳이 없을 정도예요. 36도, 40도까지 올라가는 이 상황에서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재난지역을 별도로 지정해야 되는데 전국이 다 재난지역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재난지역은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그 해당 재난에 따라 신체·생명·재산에 문제가 있을 때 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는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소위원장 김원이** 물론 산업부는 정해진 다음에 후속 조치를 하는 걸 텐데 문제는 혹서기 때문에 지금 온열환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사망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국적인 재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오늘 위원님들 의견들을 정리하자면 오늘 법안을 통과시키기에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의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지금까지 나온 위원님들의 어떤 문제의식과 대안 제시 혹은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대안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이걸 계속 심의할 테니까 다음번에는 정부 측에서 전향적으로 대책을 좀 만들어서 위원님들 방에 제안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래 주실래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위원님들께 별도의 설명은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왜 계속 이렇게 반대의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느 나라나 요금 규제 자체를, 복지할인을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물론 정공법은 아닙니다만 약관을 통해서, 근거 규정 6조를 통해서 하고는 있는데요. 이게 법으로 다시 명백히 규정이 될 경우에는 나중에 제도 개편에 이것이 너무 경직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없애는 게 어렵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위원장 김원이** 잠깐만요.

김성환 위원님, 마무리해야 되니까요.

○**김성환 위원** 한마디만.

차관님, 예컨대 저소득층에게 몇 %를 할인해 줘라, 20%를 해라, 30%를 해라 이렇게 구체적인 액수까지 규정하는 것은 차관님 얘기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인 근거를 만드는 것까지를 문제 제기를 하시면 그건 입법을 하지 말라고 그래야지, 모든 것에서. 그것까지 탄력성을 제약한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행정부의 재량권을 너무 과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옳지 않습니다. 감면의 구체적인 액수까지를 제한하면 그건 입법권의 남용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대상 그리고 이미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전기사업법에 포함해서 근거 규정을 갖자고 하는 내용까지를 차관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떡합니까?

○**소위원장 김원이** 차관님 답변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포괄적으로 법률안으로 정하는 사례는 굉장히 많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하는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 심의하도록 하는데요.

○**서왕진 위원** 자료 요청만 좀 해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김원이** 예.

○**서왕진 위원** 차관님, 에너지 복지 실태조사 가장 최근 결과 분석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한전 약관 개정의 여러 가지 프로세스나 결과에 대한 한계를 많이 지적들을 했기 때문에 현재 한전 약관 개정 방식하고 지금 발의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전기요금 감면과 관련된 프로세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좀 분석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에너지바우처하고 한전 약관 현재 프로그램에 의해서 폭염과 한파 시기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대상을 어떻게 특정하고 있고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현행 제도 체계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역시 또 평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 심의하기로 하는데 정부 측에서 좀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 드리고요.

또 하나는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이 법률안에 대해서 좀 여야 위원님들이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다음번 우리 계속 심의할 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소위원장 김원이** 이것은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으로 넘어갈 텐데요. 지금 2차관님 소관 사업이, 7항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이 2차관님 소관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거 하나하고, 8항부터 13항까지는 또 1차관님 소관이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하고 왔다 갔다 하시기 좀 번거로우실 테니까 제가 2차관님 편의를 봐 드립니다. 7항은 8항부터 13항까지 1차관님 소관 법률안을 처리한 후에, 13번 항 이후에 도시가스사업법을 처리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오후에는 8항부터 법안 상정해서 계속 심의해 나가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배려가 되려면 뒤엣것을 앞으로 붙여서 해야지 앞에 있는 걸 뒤로 빼주는 게……

○**소위원장 김원이** 그런데 어차피 1차관도 와 있으니까.

○**박형수 위원** 그냥 농담으로 한 겁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14번부터 당겨서 할까요? 그건 좀 그렇잖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 하고 또 갔다가 다시 오셔야 되니까 가셨다가 일 보시고 1차관님 상황 처리한 후에 같이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원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법률안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3건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1건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

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먼저 8항부터 10항까지 조지연·이재관·이철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인데, 먼저 소부장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거나 또는 폐지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지연·이철규 의원안은 소부장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현재부터 5년 연장하려는 것이고, 이재관 의원안은 소부장 특별회계 유효기간을 폐지해서 상설회계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부장 특별회계는 2019년 8월에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0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소부장 특별회계를 통해서 우리나라 소부장 산업의 자립화와 경쟁력 강화에 상당한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소부장 산업의 육성·보호,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의 필요성 그리고 소부장 재정 운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내용 등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추가로 이철규 의원안은 특별회계의 명칭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변경하고 특별회계 세출대상 사업에도 ‘공급망 안정화’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회계의 명칭 등에 ‘공급망 안정화’ 추가 관련해서 현행법에 제명이 공급망 안정화 관련 사항이 반영된 게 23년, 작년 6월 법 개정을 통해서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의 명칭과 세출사업에는 아직 ‘공급망 안정화’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은 작년의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유효기간 5년 연장 및 명칭 변경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질의하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성환 위원** 이재관 위원님이 먼저 한 말씀 하시고……

○**소위원장 김원이** 예, 이재관 위원님.

○**이재관 위원** 특별회계를 설치한 뒤에 나름의 성과가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당초 계획했던 부분이 뭔가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년 연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일한 의견을 주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먼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금년만 하더라도 한 2조 1600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고, 지난 5년간 11조가 넘는 투자를 통해서 R&D라든지 고용이라든지 특허라든지 다양한 성과가 나타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특별법을 제정했던 목표가 상당 부분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다른 유사 입법례를 보면 이렇게 특별회계 시한이 종료되고 나서 다시 한번 연장을 거쳐서 폐지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바로

그 기한을 폐지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칙적으로 유효기간 5년 연장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이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제가 5년이라고 하는 기한을 두지 않은 것은 저는 사실 소부장 특별회계는 소기의 사업 목적이 달성되면 당연히 폐지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5년으로 묶다 보니까 처음에 접근할 때 5년 주기의 계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이 소부장 사업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5년이고 이후에는 폐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단기적인 계획, 중기적인 그러한 계획이 우리의 당초 취지인 자립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3년 내에 소기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면 5년까지 갈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3년 뒤에 폐지해도 되는 것이고. 그런 취지에서 저는 사업 기간을 두지 말고 사업 자체에 초점을 두어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런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서일준 위원님.

○**서일준 위원** 차관님, 일본이 수출규제를 했던 불화수소 부분은 성과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그때 반도체 수출규제에 따라서 소부장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상당 부분 기술 자립화를 이룬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많이 있고 하지만 최근의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저희가 더 보강해야 될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방금 이재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데요. 이게 처음 시작했다면 5년이 맞는데 지난 5년간 실시해 보니까 성과가 나더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그렇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래서 5년이라는 시한을 박지 말고 저는 이걸 정부에서 동의한다면 계속하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다른 분들 의견 더 있으신가요?

정리하자면 두 분의 의견은 유효기간 없이 하자는 수정안인 거지요? 이재관 위원님 안에 대해서 서일준 위원님이 동의하신 거고요.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 저는 애초에 이 특별회계를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규정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되는 걸 상정했다면 아마 처음부터 한시적으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시적으로 했던 첫 번째 목적은 이때까지 투자를 하고 지원해서 소부장 부분의 자립화를 이루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는 그 만료된 시점에서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보고 이것을 계속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자는 취지에서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려면 일단 소부장 특별회계를 실시했더니 이

러이러한 성과들이 있더라도 그다음에 어떠어떠한 것들은 미흡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더 하려면, 이 미흡한 성과들을 달성하려면 5년이 더 필요하다, 3년이 더 필요하다 또는 영구히 해야 된다 아니면 이 시점에서 이것은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 이 법안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미흡하다라는 분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런 분석도 없이 이것을 단순히 기간만 연장할 거냐 말 거냐, 영구히 할 거냐 이렇게 논의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부장 산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우리가 여기에 집중 노력을 한 결과 일부 성과가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제가 또 다른 부분에서 듣기로는 이것은 큰 효과가 없었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양쪽이 다 공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 주고 그래서 이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지, 오히려 기간을 폐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차관님, 저는 박 위원님 좋은 제안이신 것 같거든요. 자료 좀 만들어서 성과와 함께 혹은 미흡한 점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잠깐만요.

두 분, 세 분 의견 나누는 중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국가재정법상 특별회계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실 게 있어서 먼저 듣고 토론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참고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이철규 의원안으로 특별회계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고, 뒤에 있는 명칭 변경하는 것은 우선 논외로 하고 유효기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한시적으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유효기간을 폐지해서 상설 회계로 하느냐를 같이 논의하고 계신데 이 사항 특별회계 유효기간이 국가재정법 개정 사항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개정안이 기재위에서 논의되어야 하는데 동일하게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안으로 국가 재정법 개정안에는 소부장법 특별회계와 동일하게 5년 한시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연동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폐지하려면 거기도 폐지하는 것으로 빌의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그렇습니다. 유효기간을 없애는 것으로 같이 돼야 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쪽에서도 논의할 때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다고 통지를 해 주면 될 텐데 그래도 그 법안의 취지를 살리려면 일단 그런 상황을 고려해 달라 이런 말씀이시지요.

허성무 위원님 먼저.....

○**허성무 위원** 아직 이 법안을 연장할 건지 폐지할 건지 확정도 안 됐지만 차관님, 산자부에서는 이미 예산편성해서 기재부로 다 줬을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 내용을 우리한테 주시는 게 좋겠네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 이미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하고 한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허성무 위원** 그럴 정도로 필요성이 있다면 그 필요성을 제대로 강조하고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아까 위원장님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사업의 성과와 앞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 이런 것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김성환 위원님 하시고 박형수 위원님 하시지요.

○**김성환 위원** 박형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앞에서 보고하신 대로 이 소부장 특별회계가 만들어지게 된 취지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서 국내 특히 반도체 산업의 소부장 산업을 육성하자고 하는 취지가 담겨 있었고 실제로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일본으로부터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성과가 있었습니다.

○**김성환 위원** 부처의 생리로 보면 산업부는 이참에 이 제도가 독립해서 특별회계가 있는 게 산업부의 생리로 보면 맞을 거고 기재부의 생리로 보면 이것을 다시 한시법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통합하고 싶어 할 텐데, 우리나라의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대기업 중심으로 일종의 조립산업은 많이 발전해 있더라도 여전히 기초 소재·부품 관련한 산업은 첨단화·정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게 5년 단위라기보다는 우리가 제조 강국으로 가는 데 꼭 필요한 영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일종의 통계 혹은 성과 이 부분에 대해 이것이 영구화되기를 바라는 산업부 입장에서의 준비 정도는 약간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혹시 다른 법도 연동된다면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한국의 산업과 경쟁력을 확대하는 데 보다 유효한 수단으로 가려면 가급적 이재관 위원님 말씀대로 가는 게 맞아 보이는데 관련한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해서 다음번에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아니, 그런데 다음번까지 해서…… 이 정도면 사실은 수정 의결해도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재관 위원님께서만 양해해 주시면 사실은 수정 처리가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

고동진 위원님.

○**고동진 위원** 일단 모든 분들이 소부장 특별회계 지난 4년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통계 데이터를 많이 안 가지고 계시지만 실적이 굉장히 있었던 분야거든요.

○**김성환 위원** 그렇지요. 솔브레인이 대표 아닙니까, 솔브레인.

○**고동진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기재부든 산자부든 김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딱 맞는 얘기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안은 통과시켜서 5년을 더 연장해 주고 그때 가서, 이 위원님께서 팬찮으시다면 한번 5년의 시간을 주고 소부장 중소기업들의 분발을 더 독려하면 어떨까 싶네요.

○**김성환 위원** 폐지는 아니고 5년이냐 항구하냐 이런 얘기잖아요.

○**소위원장 김원이** 그 유효기간 조항을 없앨 거냐 5년으로 연장할 거냐 문제인데.

○**박형수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단 성과와 앞으로 부족한 부분, 채워야 될 부분 이것 보고를 받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런데 성과는 55페이지에 보면, 소부장 특별회계 개요 및 성과는

55페이지에 정리되어서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정도 갖고는 부족한 것 같으니까 좀 더 심도 깊게 분석해서 보고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55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동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런 정도로 해 놓고, 이 법은 11항 얘기를 또 같이 처리해야 되거든요. 11항 얘기도 들어 보면서 동시에 보면 어떨까요?

○김성환 위원 11항이 같아요?

○소위원장 김원이 예, 연관되어 있는 법입니다.

○김성환 위원 그러네.

○소위원장 김원이 그래서 11항을 수석전문위원님 보고받고 정부 측 의견을 듣고 같이 묶어서 토론하면 어떨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의사일정 제11항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 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은 지금 논의하신 소부장 특별회계 관련 특별법 개정에 맞춰서 명칭을 변경하고 유효기간도 동시에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앞의 소부장 특별회계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맞추어서 기간을 5년 내지는 유효기간을 삭제하거나 그리고 뒤편에 있었던 관련 명칭에 ‘공급망 안정화’를 같이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원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또 합쳐서 같이…… 이재관 위원님.

○이재관 위원 정부 측에서 5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 의견은 하나의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만 할 때 장기적인 암목에서 접근을 해야 될…… 사업의 내용을 보면 소부장 자립화라는 것이 있거든요. 사실 자립화라고 하는 것을 5년 내에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만 그것의 편더멘털을 하는데 확실하게 할 수 있다면야 굳이 그것을 제가 고집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다른 분 의견 있습니까?

○박형수 위원 저도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오늘 결정하나 다음 회의 때 결정하나 별 차이가 없다라면……

왜 제가 성과와 미흡한 점을 분석을 해 보자고 그러냐면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도 각자 생각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런 사업에 추가를 해야 되겠다 또는 지금까지 했던 이 사업 중에서 이것은 별 성과가 없으니까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논의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시기상으로 보더라도 오늘 하느냐 다음 회의 때 하느냐 큰 차이가 없고, 기본적으로 연장에 대해 합의해 놓고 그 절차를 한번 거치고 난 다음에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다른 분들 의견 듣고요.

저는 이 법안을 내 주신 분이 조지연 의원님, 이재관 의원님, 이철규 위원장님이 연동해서 내신 분이어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 가지고 그랬던 건데 다른 위원님들이 한 번 더 성과를 듣고 나서 다음 법안소위 때 통과하자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신중하게 가자는 취지에서……

○**김성환 위원** 공급망 안정화는 넣는 것으로 하고.

○**박형수 위원** 넣는 것으로 하고.

○**소위원장 김원이** 명칭 변경은 합의가 된 거고, 5년이냐 아니면 유효기간을 없애는 거냐, 그래서 이 법이 죽 가는 거냐 이 차이거든요. 명칭은 이미 합의가 된 겁니다. 명칭은 이미 합의가 됐고, 5년도 사실 대체적으로 법안을 내 주신 이재관 위원님께서 이철규 의원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면서 사실은 쟁점은 없는데 박형수 위원님께서 성과를 좀 더 우리가 공부하고 혹시 추가로 고려할 사항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보자는 거니까 저는 그런 취지는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한 번 더 논의하는 걸로 하고 아니면 저는 사실 통과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논의했으면. 사실 이런 법 우리가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이 정도로 합의되는 법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서 제 욕심에는 이런 정도가…… 본회의 때 우리 산자위의 성과로 축적되는 거니까 저는 통과시켜도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박형수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박형수 위원** 그렇게 꼭 하고 싶다면……

(웃음소리)

그런데 잠깐만요. 그렇게 하더라도 다음에 성과 분석하고 미흡한 점 이것은 하고 그때 의견도 제시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통과시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통과시키는 걸로 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대의견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통과는 됐지만 성과와 한계, 문제점 그리고 더 나은 대안 이런 것들은 산업부에서 준비하셔서 꼭 좀 보고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빠른 시일 내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 법안은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의사일정 제12항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개정안은 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되 지원금의 한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화단지에서 대규모 공장 등 시설 투자를 하는 과정에 전력, 용수 등의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사업자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지원금의 한도 등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산자부는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재정이나 산업 여건 등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현재 관련된 지원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중인 점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이 아닌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지원금의 한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부분을 ‘지원금의 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문구로 수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에 있는 법률에 근거해서 기재부와 산업부가 고시 개정 작업을 해 왔고 빠르면 이번 달 중에 그 고시를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도가 곧 시행이 되고 법체계를 그렇게 가져가고 있는데 법안을 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좀 융통성 있는, 상황변화에 맞춰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좀 유연하게 제도를 설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김동아 위원님.

○**김동아 위원** 이게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이나 아니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더 지원을 하거나 이런 방향성이 혹시 정부 측에서 있는지, 지금 관련된 자료 보니까 용인하고 평택에 1000억 원이나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맞는지 의문이 있어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향후 계획이 어떤지 한번 질문드려 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수도권, 비수도권을 특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용인·평택과 같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구미, 울산, 새만금 이런 지역에도 특화단지로 저희가 지정해 놓은 곳에 균형 있게 지원되도록……

○**김동아 위원** 아니, 균형 있게 하기는 하는데 지금 금액적으로 보면 용인·평택에 1000억 원이고 나머지가 400억 원 상당이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그렇습니다.

○**김동아 위원** 이렇게 되면 오히려 수도권 집중 현상을 이 법을 통해서 더 강화시키는 게 아닌지 우려가 되는데 향후에 혹시나 고시를 제정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에 좀 재정 지원이나 그런 게 가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당부 차원인 거지요?

○**김동아 위원** 예.

○**소위원장 김원이** 또 다른 분……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지금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런 지원이 필요하고 기반시설 지원 비용을 직접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또 시급한 현안이고 또 김한규 의원님의 입법 취지, 발의 취지도 살리면서 정부가 고시 등을 수정 중에 있다고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하기 위해서 정부안을 따르는 것도 방법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수정안 동의인 거지요?

○**강승규 위원** 수정안 동의입니다.

○**허성무 위원** 질문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허성무 위원님.

○**허성무 위원** 차관님, 특화단지 조성·운영 지원에 관련된 제20조가 있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산업기반시설뿐만 아니라 공동연구개발 인프라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그렇습니다.

○**허성무 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에는 공동연구개발 인프라는 빠지고 기반시설만 들어가 있는데 빠진 이유가 특별히 있으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법안을 그렇게 발의해 주셨는데요. 1항에 따라서 산업기반시설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공동연구개발 인프라도 다 지원이 가능은 합니다, 지금 현재 법상으로도. 지금 현재 발의하신 법안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지금 있는 1항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는 자체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특히 인프라와 관련해서, 산업기반시설과 관련해서는 사업자들의 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나치다 이런 의견이 그 동안 많이 제시가 되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에서 아마 이 법안을 발의하신 것 같고 다소 의미는 중복의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강조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면 정부 입장에서는 동의를 한다는 것이고요. 다만 세부적인 규정을 고시로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허성무 위원** 그리고 발의하신 분들이 공동연구개발 인프라는 뺐고 그것 안 들어 가더라도 이미 지원 근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다 그 말씀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차관님, 질문.

 이게 대통령령으로 할 때하고 고시로 할 때의 차이가 결국은 무게감의 차이인 거잖아요?

○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박성택 예.

○ 소위원장 김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의 무게감과 산업부 고시로 했을 때의 무게감이 약간은 차이가 있을 텐데, 물론 책임감이나 혹은 그런 의지의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그랬을 때 우리 국민들이 이걸 보면서 의지의 문제로 보지는 않을까요?

○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박성택 물론……

○ 소위원장 김원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훨씬 강한 의지를 우리가 피력하게 되는 것인데 산업부 고시가 조금 약해 보이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박성택 내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통령령이 물론 고시보다는 상위 규범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더 정부가 확고한 의지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고시로 한다 하더라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소위원장 김원이 전문위원님, 이런 경우는 고시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나요, 다른 입법례를 보면?

○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박성택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지원기준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고시로 이렇게 위임을 해 놓고 있습니다. 많은 법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더 추가 의견……

김성환 위원님이 먼저 들었으니까 김성환 위원님이 먼저……

○ 김성환 위원 시행령과 고시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정부의 행정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임의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산업과 특정 기업에 편향됐다, 도대체 기준이 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관되게 하는 게 공정하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왜 삼성전자는 되고 포항제철은 안 되냐 이렇게 접근하면 근거를 대기 어려워요.

그런데 시행령으로 하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야 될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고시가 되든 시행령이 되든 관계없이 특정 산업 혹은 특정 전략산업의 어떠어떠한 기준에 해당되면 지원한다고 하는 세부 기준 같은 것을 만들어 놔야 이게 형평성, 투명성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용인에 삼성전자 평택공장이 만들어지는데 ‘해외에 비하면 국가 지원이 너무 적다고 하는 아주 포괄적인 이유로, 삼성전자가 그래도 다른 기업에 비하면 분기별 수익이 꽤 나는데 꼭 그런 데를 지원해 줘야 돼?’ 이런 의문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행령과 고시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지원을 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근거를 어떻게든 만드셔야 합니다. 제가 그 근거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소위원장 김원이 저도 김성환 위원님 질문에 염是从, 그러니까……

○ 김성환 위원 전라도 사투리가 막 나와 버리네.

○ 소위원장 김원이 연장해서. 속기록을 잘 써 주십시오.

김성환 위원님의 의견에 덧붙여서, 그러니까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비용을 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주인데 그것은 법안에 명기

되는 것이고 다만 지원금의 한도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거냐 고시로 정할 거냐의 문제인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는 듣고 싶어요, 같이 연동해서.

얘기를 듣고 할까요, 서일준 위원님 얘기를 먼저 할까요?

○**서일준 위원** 제가 연관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서일준 위원님 얘기 듣고.

○**서일준 위원** 저도 김성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첨단전략산업이 어떤 산업입니까, 차관님?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 4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 4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서일준 위원** 조선업은 들어가면 안 돼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아직은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러니까요. 명확하게 조선업도 첨단입니다. 반도체나 이차전지도 첨단이지만. 그래서 김성환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 부분부터 규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정부 의견은 동의하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기본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어떤 게 첨단산업이고 첨단전략기술인지에 대해서 정하는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 규정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4개 산업이 지정이 돼 있는 것이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이든 다른 중요한 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산업들이 심의 절차를 거쳐서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성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은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령상으로는 그냥 어디어디에 지원을 한다, 마다 이런 얘기만 법에 있고 나머지는 통쳐서 고시로 하든 시행령으로 하든 이렇게 위임을 해 놓은 그런 상황이라서 수도권·비수도권 문제나 여러 가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이게 법안이, 지원 조치들이 우리 법에 다른 나라와는 달리 들어온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법이 초기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선은 어떤 부분을 지원할 거냐, 말 거냐 중심으로 지금은 법안의 구조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한다면 도대체 정부가 어느 정도 돈을 재정에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까지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 법안이 가야 될 방향은, 지원을 할 때 도대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이 법안을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논의해 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고동진 위원님.

○**고동진 위원** 저기가……

○**김성환 위원** 제가 예를 삼성전자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고동진 위원** 삼성 떠난 지 오래된 사람입니다.

차관님한테 여쭤볼 게, 대통령령으로 지원을 하게 해 놓은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하고 기재부장관이 협의를 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까?

○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박성택 예.

○ 고동진 위원 그다음에 63페이지에 보면 용인·평택하고 일반산단이라고 다 써 놨어요. 그렇지요?

○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박성택 예.

○ 고동진 위원 용인의 변전소·송전선로나 용인 일반산단 용수관로 이건 SK하이닉스를 대상으로 한 거지요?

○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박성택 예. 여기서 말하는 용인 일반산단은 SK하이닉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평택은 삼성전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 고동진 위원 존경하는 김성환 위원님, 용인은 일반산단이라서, 왜냐하면……

○ 김성환 위원 예를 그렇게 들었다 이겁니다.

○ 고동진 위원 대통령령으로 한 국가산단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현재 도지사가 한 부분 일반산단은 지원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도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김동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여기 구미, 포항 이런 지방으로 좀 많이 가는 게 균형발전으로 해서는 가능한데 반도체공장이 사실은 평택이 마지막 선이에요, 내려갈 수 있는 게.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대신 좀 말씀을 드릴게요.

○ 소위원장 김원이 목포까지 내려오면 좋은데.

○ 김동아 위원 아니, 비행기 타고 미국까지도 가는데 왜 평택 이하는 못 가는 건지 저는 잘……

○ 고동진 위원 전기, 용수 때문에 가장…… 사람하고.

○ 소위원장 김원이 전남에 재생에너지가 계속 만들어질 테니까요.

○ 고동진 위원 제가 정부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일단 코멘트를 드립니다.

○ 소위원장 김원이 알겠습니다. 지금 논의 내용은……

박지혜 위원님.

○ 박지혜 위원 저는 간략하게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61페이지에 보면 지금 대통령령에서 고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의 이유로 현재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중이다. 그러니까 이미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니까, 기왕에 이런 고시를 만들 거니까 그 법적인 근거를 여기에 두기 위해서 대통령령이 아니라 고시로 하자 이렇게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가요?

○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박성택 예,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는 맞습니다.

○ 박지혜 위원 그러면 기존의 고시는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그냥 필요하니까 기준을 만들고자 했던 것인가요?

○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박성택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의 1항에 있는 지원 근거에 기반해서 만드는 고시입니다. 그래서……

○ 박지혜 위원 1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1항에 있는데 고시와 관련해서 산업부장관이나 이런 산업부에 위임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박성택 그것은 특화단지 운영에 관한 이야기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본문에 보면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라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지원할 거냐에 대해서 그 근거가 필요할 것 같아서 고시로 이렇게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현행 법령 내용을 보면 사실은 구체적으로 위임을 한 것 같지는 않아서,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위임을 한다는 표현은 없는데 저희가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고시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추가로 더 질의하실 것 없으면 정부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가 받을 거냐 아니면 좀 더 심사숙고해 볼 거냐 이 결정만 남은 것 같은데요.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아까 논의는 고시로 하더라도 충분히 정부의 의지와 이것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산업부의 약속은 있었고요. 그 무게감의 차이는 없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산업부의 의견을 받아서 수정동의를 할까요?

○**김성환 위원** 세부 절차와 기준을 만들라고 하는 단서를 붙여서……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그것을 받아 보고 그 이후에 할까요, 고시안을 보고?

○**김성환 위원** 아니, 그것을 담으라고……

○**소위원장 김원이** 고시에 그런 내용을 담아라?

○**김성환 위원** 그렇지요. 담아야지요.

○**박형수 위원** 고시는 당연히 그런 내용을 담는 걸로 돼 있잖아요. 안은 구체적인 사항을 하니까 당연히 담게 돼 있지.

○**소위원장 김원이** 여기에 보면 지원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재정, 산업 여건 등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정하겠다 그러면서 제정고시(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신뢰하도록 하는 전제하에서 정부 측의 수정안을 받아서 의결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박지혜 위원** 그런데 이미 제정고시(안)이 행정예고 중이라는 것 아닌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니까 예고가 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 내용을 받아 볼 수……

○**박지혜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한 내용을 반영할 수가 있나요? 공개되었을 것 같은데.

○**강승규 위원** 준비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김원이** 아니, 예고 중이라고 했어요.

○**박지혜 위원** 행정예고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예고 중이니까, 사실 우리가 좀 부지런했으면 차관님께서 오늘 그 예고안을 깔아 주셨으면……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미리 좀 설명을 드리든지 자료를 공유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13항을 우리가 지금 곧 심사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예고안을 깔아 주시고 의결은 그거 한 다음에 하면 어떨까요?

○**박형수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소위원장 김원이**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 정부 의견의 수정동의 보면, 전문위원이 대답하시든지 차관이 대답하시

든지, ‘지원금의 한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는 고시 사항으로 한 다음 ‘지원금의 비율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한도를 비율로 바꾼 이유가 있는 건지?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지금 현재 고시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정하고자 하는 바가 아까 전반적으로 특화단지별로 사업의 투자 규모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지원 비율을 차등적으로 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어서 한도보다는 비율로 정하는 게 정합성이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시지요.

그 행정예고(안)을 지금 돌려 주세요. 갖고 계실 테니까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 그 사이에 우리는 한번 짬짬이 읽고 계시고 13항을 처리를 먼저, 의결을 잠깐 늦추고 13항을 먼저 하면 어떨까요?

위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시지요.

12항에 대한 것은 여기서 논의를 잠시 중단하고 의사일정 제13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페이지 64쪽입니다.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산업 단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항을 담고 있는데 세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관리기관의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공장이나 창고의 지붕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과 확충에 관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급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는 그 범위 표현과 관련해서 현행법에서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각각 구별해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조고도화계획 포함 사항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산업 단지 구조고도화계획에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 방안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의 에너지 사용 비중 중에 화석연료의 존성이 높은 실정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시에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개정안의 조문과 관련해서 동법의 구조고도화계획 관련 조문이 올해 1월에 개정이 되었고 올해 7월 10일 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개정 전을 기준으로 조문이 작성되어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체계화 자구의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거 구법상 사업시행자가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는 게 개정되어서 현행 시행되고 있는 법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구조고도화계획하고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구조고도화사업계획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구조고도화계획에 포함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우선 실무적인 판단을 해서 그것을 반영한 체계 자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세 번째로 국가·지자체 비용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부가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서 27년까지 25개의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탄소중립형 산업단지 환경조성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따라서 전체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이런 관련 비용을 보조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구와 체계에 대한 수정의견은 72쪽에 조문대비표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우선 72쪽 설명드리면 개정안에는 44조 1항에서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 이렇게 표현했는데 신재생에너지가 법률상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구별되어 있으니까 그 자구를 반영해서 수정했습니다.

다음은 75쪽 하단에,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45조의 2 3항에서 개정안을 내고 있는데 구법과 현행으로 제가 표시한 것처럼 기존의 구법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행되고 있는 현행은 조문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과거에는 사업시행자가, 현재는 시·도지사가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반영하는 게 개정 취지에 맞지 않나 해서 현행을 기준으로 해서 조문 정리를 한 것이 72쪽 하단부터 73쪽, 74쪽의 5의 2호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방안을 신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신재생에너지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자구 수정에 동의합니다. 또 현행법 체계에 맞게 조문의 위치를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지원 확대를 위한 조항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수석전문위원 제안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신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없으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 절차 끝겠습니다.

그리면 의사일정 제13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차관님, 마지막 17항 유통산업발전법이 1차관님 소관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때 같이 처리할까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원이** 자료가 아직 안 왔으니까 그러면 12항 안건은 17항 안건 처리하기 직전에 입법예고(안) 그것을 미리 배포해서 검토한 후에 의결 절차 밟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예.

○**소위원장 김원이** 1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들어오셨나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바로 시작해도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김성환 위원** 14항부터 하면 안 돼요?

○**소위원장 김원이** 14항 광업법부터 먼저 하자고요?

○**김성환 위원** 예.

○**소위원장 김원이**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그래도 될까요?

그러면 14, 15가 비슷한 법이고 이철규 의원님 법안이니까 그러면 14, 15번을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 7번 처리하고 16번 처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님, 박형수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박형수 위원**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그냥 양해해 줄게요.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의사일정 14항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업법 일부개정안입니다.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입니다.

78쪽입니다.

개정안은 먼저 산자부장관이 국가광물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하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산자부는 광물자원 탐사 시에 확보된 암추를 보관·관리하고 분석·가공해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부터 국가광물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의 관련 입법례를 보면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도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국가광물정보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운영, 업무 위탁, 비용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광물자원의 체계적인 탐사·개발 및 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산업자원부장관의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 위임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있습니다. 다만 권한의 위임 대상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관련해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임이 가능은 한데 법 해석상 국민들이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3쪽입니다.

또한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 중에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고 광업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관련 업무를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산자부장관의 권한 위임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고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며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별다른 의견 없고요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의 동의가 있었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규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동의가 있었고요.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의사일정 15항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폐광지역 여행객이 폐광지역진흥지구 내의 면세품 판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세나 부가세 등을 면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1989년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석탄 광산이 폐광함에 따라서 정부는 대체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실질적인 대체산업의 육성 효과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고 폐광지역 7개 시군의 인구는 50% 수준으로 감소한 실정입니다.

다. 또한 최근에 대한석탄공사가 단계적인 조기 폐광을 결정함에 따라서 조기 폐광지역에서 향후 경기 침체로 인한 지역 공동화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86쪽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폐광지역에 지정면세점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에 폐광지역의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해서 조기 폐광에 따른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체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내 내국인 면세점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도입·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정안은 기재위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심사 과정에서 이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기본 방향에는 동의하는데요. 다만 현재 동 법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도 동시에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구체적인 조세특례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이 돼야지 작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다는 전제하에 조건부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지혜 위원님.

○박지혜 위원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사실 폐광이라는 것이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 89년에 시작됐고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23년부터 전남 화순, 24년 태백 장성, 25년 삼척 도계가 폐광을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고용된 인원은 총 얼마나 되나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장성 탄좌가 최근에 노사 합의를 통해서 폐광하기로 했고요, 지금 도계 하나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지역들을 포괄적으로 화순·태백·삼척이 폐광지역으로 규정되어야 되느냐, 지금 현재 탄광에 고용된 인원이나 현재 지역경제가 탄광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느냐 그게 조금 의문이 들어 가지고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지역을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1400여 명 정도가 현재 아직도 남아 있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그중에서 장성·도계 지역에는 한 800여 명 정도가 돼 있다고 알고 있고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기존의 근로자분들에게는 소정의 퇴직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 탄광지역이 탄광 자체가 문을 닫으면서 전반적으로 지역소멸 또 경제 자체가 위축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폐광지역의 경제를 다시 되살리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

면세점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환 위원 위원장님!

○ 소위원장 김원이 예.

○ 김성환 위원 폐광지역은 오랜 기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지역을 다른 일자리로 대체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다른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이 법이 통과됐을 때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숙고해야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지역이 생기면 카지노를 해 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국에 카지노를 추가로 허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이 많아서 이 역시 잘 안 됐는데요. 면세점도 지금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선산업이 한때 안 돼 가지고 창원이나 고성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예를 들어서 이 석탄지역에, 폐광지역에 면세점을 허용해 준다고 하면 다른 지역도 산업에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똑같은 요구를하게 될 겁니다. 얼마 전에 당진이나 서천 이쪽의 석탄발전소가 다 문 닫는 문제 때문에 그 지역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도 ‘우리 면세점 차려 줘’ 하면…… 이 법이 허용되는 순간 다른 많은 지역이 고용 불안이나 산업의 전환이 올 때 ‘폐광지역은 되고 왜 우리 지역은 안 돼?’라고 할 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은 재생에너지 산업이라든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고유한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정책적 지원을 하되 면세점과 같은 이런 대중적 처방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법은 조건부 동의가 아니라 사실상 정부로서도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전국의 지역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보면 이 법을 처리하는 것은 다른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소위원장 김원이 김성환 위원님 의견 고맙고요.

강승규 위원님.

○ 강승규 위원 폐광지역의 어려움, 소멸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 법 등이 발의된 것으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이 법이 통과가 됐을 때 김성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다른 부작용이 너무 우려가 됩니다. 저희 지역도 지금 광천지역 같은 경우 폐광지역이 있고 그런데 거기는 또 여러 가지 다른 유해물질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 건강까지 문제가 됐었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만약에 폐광지역에 면세점 등이 들어선다고 할 때 ‘우리는 그동안 피해도 봤는데 왜 안 하느냐’ 이렇게 형평성을 요구할 수가 있고 그래서……

특히 또 아마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도, 이것을 정부도 조건부 동의한다는 것이 이쪽에서 허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대신 지금 이 폐광지역을 비롯한 이런 소멸 문제, 특히 이런 상대적으로 국가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개발이 되거나 활용됐던 지역에서 심각한 지방소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등을 통해서 거기에 차별화된 지원, 아까 말했지만 그 지역에 맞는 맞춤형 지원 등이 필요하고 그런 것을 위한 특별법 등이 새로 마련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지역구로 있는 광천 같은 경우는 광천 토굴 새우젓으로 특화돼서 합니다만 여기에 또 어떤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느냐면 남아도는 쌀 등을 전통주로 만들어서 보관하고 숙성시키는 그런 것들을 토굴을 사용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도 제시돼서 그런 것들이 검토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지역별로 특화돼서 어떤 산업 측면으로, 대체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 등 근거를 마련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만 이 법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 등이 너무 우려된다 그렇게 의견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강승규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차관님, 면세점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조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이 가능하므로 해당 법이 개정된다면 조건부 동의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될 가능성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기재부에서 많이 반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산업부가 평통 치는 거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저희가 협의는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이 폐특법,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자체가 45년까지 한시법으로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소위원장 김원이 2045년?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2045년까지 한시법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 또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단은 산업이 죽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지역의 인구가 줄면서 지방소멸로 가는 지역의 그 절박한 마음이 사실은 이철규 의원님의 이 법에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취지와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해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것을 풀어 가는 해법이 면세점 같은 게 그런 해법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던 것 같고, 좀 새로운 해법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강승규 위원님의 제안이 저는 정말 타당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이철규 위원장님의 특별 부탁을 받았습니다마는, 속기록에 꼭 남겨 주십시오, 이 문제는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강승규 위원님이 말씀 주신 이런 위기에 처한 지역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역소멸의 위기에 있는, 산업 위기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편타당한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산업부가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소위원장 김원이** 이 안건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심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제7항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자료 41쪽입니다.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규정에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가스도매사업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정부는 내부 지침을 근거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사회복지시설, 특별재난지역 등에 대해서 요금경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요금 감면 포함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개정안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규정에 기초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감면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서 요금경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산업자원부는 포괄적인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요금 감면 사항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지원 대상자의 범위, 지원 방법 등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로 있는 도시가스 경감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 근거 마련은 당초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런 입장을 바꿔서 지금은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가스공사는 가스요금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면 가스요금 인상 억제를 위해서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43쪽입니다.

두 번째로 요금 감면 직권신청 근거 마련과 관련해서 현재 도시가스요금의 신규 경감은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요금 감면 대상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서비스 대상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지자체장이 당사자를 대신하여 직권으로 요금 감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복지할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취지대로 요금 감면을 직권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요금 감면 대상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을 위해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개정안은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하도록

하고 있는데 하위법령 마련과 직권신청 관련된 시스템 구축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수정의견 관련해서 조문대비표 설명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개정안은 20조의3 본문에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연금수급자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 서비스를 포함하여야 한다’ 해서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전국에 34개 사업자가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34개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빈곤층 등 국민에게 도시가스 요금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수정의견의 20조의3 제2항은 가스도매사업자, 지자체에 직권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그 지원 대상자의 동의 근거 또한 같이 두었습니다.

3항에 정부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은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4항의 내용은 지원 대상자의 범위나 내용, 구체적인 방법 등을 산자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두는 내용입니다.

20조의4는 직권으로 대리 신청을 하기 위해서 관계 기관에 개인정보와 관련한 협조 요청을 하는 근거 조항입니다.

51쪽의 3항을 보시면 관련 자료나 정보를 활용해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했던 자는 취득한 자료나 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52쪽 수정의견에 있는 것은 1항은 현행에 있는 내용을 반영한 것이고 2항은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목적 외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처벌 벌칙이 현재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어찌 보면 과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2020년에 전기사업법을 개정하면서도 유사하게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 10년 이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하였고 그 외에 임금 채권보장법 등에도 입법례가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아침의 전기·가스사업법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같은 방식으로 도시가스의 복지할인도 약관을 통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었습니다만 전기·가스사업법과 달리 도시가스사업법에서는 일반적인 근거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에너지법에 근거해서 했던 복지할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근거 조항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저희는 일반적인 근거 조항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직권신청과 관련하여서는 저희가 실제 복지할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권자가 복지할인 혜택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동의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벌칙 조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부칙이 공포 후 3개월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과거에, 대상 범위가 전기사업법 그러니까 전기요금의 복지할인과 비슷한 규모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때 전기 쪽 복지할인을 확대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저희가 노력했습니다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보장 서비스 관련된 인력의 정보를 받아서 다시 또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하는 과정이 아무리 빨리해도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기 때문에 부칙의 시행일은 6개월로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정부 측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저도 오전에 했던 전기사업법에서처럼 취약계층에 대해서 전기요금이든 가스요금 등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측면에서 당연하나 이렇게 법에서 강제, 의무규정으로 지정하고 그것을 또 요금 감면 대상자를 자자체 등이 찾아서 해야 되는 부분 등이 과연 도시가스요금 체계에 있어서 적절한지……

지금도 산자부가 내규나 뭔가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지요, 취약계층에 도시가스요금도?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전기와는 조금 다른 게 이것은 도매요금 그러니까 가스공사에서 하는 도매요금에 대해서 저희가 약관을 지정하고 있고요, 이것은 별도로 34개 민간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소매요금은 또 민간사업자의 권한이 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정부가 그것을 어떤 내규에 의해서 그들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도시가스요금을 도매 단계든 소매 단계든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저희가 복지할인을 약관에서 규정을 하면 보통 도매사업자하고 소매사업자들이 협의를 통해서 분배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 있고요. 보통 전체 복지할인 중에 90%는 도매에서 떠안고 10% 정도는 소매에서 떠안고 있습니다만 다만 전기사업법과 다르게 이 부분은 앞에서 제가 교차보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기보다는 사정이 좋은 게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명확하게 복지할인을 공급비용에 포함되게 구조가 설계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미수금으로 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 미수금은 현재 규제자산으로서, 국제회계기준에서 규제자산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적자 부분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미수금으로 떠안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추후에 그 미수금을 요금 인상을 통해서 해소해 주는 시스템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8월부터도 가스 도매요금을 6.8% 인상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법제화해도, 법령으로 넣더라도 지금 제도 운영하는 것과 도매업자나 소매업자가, 이 부분이 일반 소비자들의 가스요금으로 바로 인상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확률이 적다는 얘기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아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상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이 돼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복지할인에 해당하는 부분은 차년도 공급비용에 포함해서 차년도 인상분에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은 왜 기본적인 근거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에너지법에는 보편적 공급에 대한 기본 조항이 들어가 있었고요 전기사업법에도 보편적 공급에 대

한 기본 조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도시가스사업법에는 그 조항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관을 통해서 하고는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인 근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최소한 에너지법과 전기사업법과 동일한 수준에서의 근거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그 두 법을 감안한 근거 조항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승규 위원** 근거 조항을 넣되 임의규정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 위원** 차관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전기사업법 제6조는 보편적 공급에 관한 규정이고 일종의 이 자체를 근거로 그것이 감면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가스는 되고 전기는 안 되냐 이 문제가 여전히 남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사업법에는 전기요금의 경감 혹은 감면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한전의 내부 규약으로 하고 있는 거고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면 도시가스나 전기가 모두 일종의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둘 다 공기업이 독점해서 공급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는 별건으로 보더라도 앞서 한전 전기료의 감면 규정과 도시가스의 취약 대상에 대한 감면 규정에 통일성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앞엣것도 내용을 수정하기로 한 것을 감안하여 그 취지를 감안해서 이것도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같은 취지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 전기사업법과 마찬가지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부분은 한전의 경우에는 공기업인데 여기는 도매·소매까지도 포함돼 있어서 사기업까지도 포함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요금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사기업에 대해서 요금을 감면해라라는 규정을 넣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예요. 진짜로 그것은 헌법에서 얘기하는 어떤 공공복리나 무슨 국가안전보장 이런 것 있을 때 제한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기본적인 구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무한정 자꾸 감면해 주라고 하면 결국은 적자가 쌓일 것이고 그러면 그 적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요금으로 그것을 전가할 것이냐 아니면 재정을 투입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근본적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일반적 근거 조항을 만드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전기사업법 정도 또는 그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현재의 안과 같이 의무조항을 넣는다고 그러면 이것은 아까 얘기한 위헌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넣는다면 임의규정으로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직권으로 신청하는, 이 직권이라는 말 자체가 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직권신청은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하는 것인데 여기는 지금 신청하는 주체를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소위원장 김원이 아니, 시장, 군수 포함해서.

○박형수 위원 시장, 군수도 포함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도매사업자든 소매사업자가 포함되면 논리적으로 모순이 생깁니다. 감면을 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해 줄 경우에 의무적으로 다 신청을 하라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감면은 재량 사항인데 그것을 의무적으로 다 대신 신청을 해 줘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직권신청이라는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만약에 한다라면 기초자치단체나 제3의 기관에서 이걸 하는 것이 맞지, 여기서 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다.

○소위원장 김원이 차관님, 박형수 위원님 말씀……

○박형수 위원 이것까지 내가 얘기하고 그다음에 같이 답변을 해 주세요.

○소위원장 김원이 아, 마무리하시고.

○박형수 위원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한테는, 아까 누설한 경우에 형량이 10년 이하라고 했는데 다른 경우에 그런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 법 말고도 다른 법률에도 이런 사항들을 누설했을 때 처벌 규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이게 조금 느낌상 과한 느낌이 있고 또 앞엣것하고 균형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앞에 보면 설치자의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기능에 장애를 입혀서 공급을 방해한 자가 1호인데 갑자기 누설한 자를 2호로 해 놔 버리면 뭔가 법체계도 안 맞는 것 같고, 그 부분은 따로 떼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형량 부분도 아까 얘기한 그 두 법에는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 그러는데, 또 다른 법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권신청 관련해 가지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직권신청이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으면 품은 들어갑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준에 전기 복지할인을 할 때 사회보장시스템을 연계해서 그 관련 기관으로부터 해당되는 대상자 전체를 저희가 받아서 저희 쪽의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확인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시·도지사,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서 가스공사에서 할 것으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기본적으로 확인 작업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6개월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직권신청으로 들어간 게 얼마 전에 겨울에 동파로 돌아가신 분이 있었는데, 대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바우처나 가스요금 할인을 못 받아서 그때 언론에서 여러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직권신청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저희가 이것 제도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동의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꼭 동의를…… 절차는 필요합니다. 직권신청은 어찌 됐든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데 못 받으신 분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꼭, 가능하다, 다만 시간은 좀 필요하다 그리고 동의 절차는 거쳐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수석전문위원님, 말씀……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조금 전에 박형수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들 저희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나서 다음번이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전기사업법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법의 개정안에 수정의견을 제시하면서 필요한 정보로 국가유공자 등록사항,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사항, 장애인 등록사항, 주민정보, 가족관계 등록사항, 재외국민 등록사항 등 그리고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시스템 이용정보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전기사업법에 있는 규정하고 동일한 정보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사업법을 2020년에 개정을 하면서 당초 개정안은 2년에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최고 별칙 수준이 10년에 1억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임금채권보장법이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가 10년, 1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별칙 수준으로, 다루는 정보가 좀 많으니 최고 별칙 수준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1년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이런 결론이 나서 그것을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고, 말씀 전에 조금 더 자료를 찾아서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지금 의견은 좀 좁혀진 것 같습니다.

○서일준 위원 제가 좀……

○소위원장 김원이 서일준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시지요.

○정진욱 위원 먼저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원이 서일준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서일준 위원 아니……

○정진욱 위원 괜찮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손을 먼저 드셨습니다.

○서일준 위원 아, 그래요?

○소위원장 김원이 제가 그쪽을 먼저 봤습니다.

○서일준 위원 차관님,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가 전국적으로 몇 % 정도 보급이 됐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한 80% 정도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 지금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에너지원과 관련하지 않고는 기본적으로는 전기요금 복지할인하고 에너지바우처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가스는 에너지바우처 지급 안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다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일준 위원 중복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서일준 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에 가 보면 도시가스가 보급 안 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를 왜 빨리 보급을 안 하냐고 가스업체에다가 물어보면 자기들은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 국민이…… 실제 시골에 사는 분들은 난방비도 도시가스가 저렴하잖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서일준 위원** 그래서 난방비도 혜택을 보지 못하고 이런 혜택도 보지 못한다면 정말 정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런데 조금 차이가 나는 게,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상자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한 380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가스 같은 경우는 비슷한 대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한 175만 가구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난방용, 취사용으로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요 난방용의 많은 부분은 집단 열병합을 통해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빠지는 부분이 있고요, 취사용도 전반적으로 전기화가 진행되면서 취사용 도시가스가 전기로 전환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100% 다 배관망을 통해서 모든 지역까지 공급을 해 드리는 게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에너지원이 바뀌는 추세도 고려를 해야 돼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다만 배관망이 깔리지 않은 지역에는 저희가 LPG를 통해서 군 단위 또는 마을 단위에 LPG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지금 지역에 가 보면 동 단위에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데 많아요. 실제로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LPG 쓰거나 이렇게 하면 실제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대책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서일준 위원님 절박한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 지역에도 도시가스 안 들어가서, 그게 또 묘하게 빈곤층이 모여 있는 동네잖아요, 산동네.

○**서일준 위원** 그럼요, 그럼요.

○**박형수 위원** 잠깐 제가 이것 관련해 가지고……

○**정진욱 위원** 예, 먼저 하십시오.

○**박형수 위원** 지금 차관님 말씀하시는 것 조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전력은, 전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다 들어가 있어서 에너지바우처든지 뭐든지 할인 이든지 이게 광범위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스는 가스업자가 이게 사업이 안 되면 안 들어갑니다. 자기들 돈이 없다는 게 아니라 배관망을 설치했을 때 여기서 수익이 안 나오면…… 그래서 군 단위 지역이나 시골 지역에 가면 그나마 거기서도 주거환경이 좀 팬찮은 지역, 아파트 단지가 그래도 조금 있다든지 좀 밀집된 어린 주거가 있는 이런 데는 들어가요, 거기는 배관 해 갖고 하면 수익이 나오니까. 그런데 진짜로 어려운 지역에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에너지바우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서일준 위원님의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것은 이 논의와 별도로 산업부에서 잘 챙겨 봐야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알겠습니다. 저희가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개편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스요금 할인이라든지 못 받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차관님, 지금은 어쨌건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 즉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논의니까요 그걸로 논의를 좀…… 두 분 말씀의 취지는 충

분히 공감하고요.

정진욱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십시오.

○**정진욱 위원**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분들 중에서 취약계층 이 부분을 논의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오히려 더 열악한 그런 분들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원이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 중에서 제20조의3(도시가스요금의 감면)의 원래 취지로 돌아가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요금 감면 서비스를 포함하여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을 둘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원래 우리가 논의를 시작한 것은 취약계층들이 대부분 본인들이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특성상 당사자 본인이 요금 감면 서비스의 대상인지 모르는 이런 경우 때문에 지금 이 법안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사례 때문에 직권으로 요금 감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원래의 취지로 돌아가야 된다고 보고요. 도시가스든 전기든, 물론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곳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결국 공공재여서 저는 에너지법 4조 5항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여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그 연장에서 본다면 취약계층을 구체화하고 그 계층에 대해서 요금 감면 서비스를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걸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저는 이 취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발언 다 하신 건가요?

○**정진욱 위원** 예.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지금 강승규 위원님은 임의규정으로 바꿨을 경우에는 동의하겠다, 정부 측 안에 대해서 동의하신 거고요. 정부 측은 수정안에 동의 입장 발표를 하셨고. 박형수 위원님께서는, 민간기업인 경우가 있는데 이걸 강제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임의규정 정도로 하자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직권 상정할 때 직권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한 문제 제기였는데 그것은 차관님이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거기에 저도 덧붙이면, 사실 신청 대상자인데 정보가 부족한 사람을 구제하는 법이에요, 이것은. 그렇지요?

○**정진욱 위원**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래서 이것은 박형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직권이라고 하는 말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고 또 수석전문위원께서 별칙 사례를, 적용 사례를 얘기해 줘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고.

이 정도면 우리가 정부 측 수정안 정도로 해서 오늘 의결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형수 위원님이 동의해 주시면 그런 정도로……

○**박형수 위원** 저는 좀 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박 위원님의 의견은 저희들이 좀 더 논의하고, 그런데 서일준 위원님도 그렇고 강승규 위원님도 동의해 주셨으니까……

○**박형수 위원** 아니, 이 부분은 전기사업법보다도 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소위원장 김원이** 아니, 그래서 임의규정으로……

○**박형수 위원** 이것부터 의결하고 전기사업법은 나중에 논의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정진욱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에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 공급자에는 민간사업자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각 지역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물론 민간사업자인 것은 맞지만 실제 그 운영이라든가 요금체계라든가 이런 건 한전하고 다를 바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요금을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면 그런 어떤 서비스에서 민간사업자가 보통 누리고 있는 자율적 재량권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것은 뭐냐면 이게 공공재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든가 이렇게 접근해서는, 가스는 아니다……

○**박형수 위원** 공공재라고 해서 기업의 형태를 떠나서 모두를 다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지요. 공공재를 사적 기업이 판매할 수도 있고 공기업이 판매할 수도 있고 국가가 직접 공급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소위원장 김원이** 박 위원님의 문제 제기는……

○**정진욱 위원** 그렇지만 거기에 공공성이 훨씬 더, 공공적 의무가 훨씬 더 크게 부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위원장 김원이** 정진욱 위원님, 박형수 위원님이 공공재라고 하는 부분을 반대하지 않았고 부정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그런 기본 방향에 대해서 논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서일준 위원님이나 강승규 위원님도 임의규정으로만 바꾸면 수정동의해 주셨으니까 이 법은 통과시켜서 우리가 이번 본회의에 올려서 통과시켜 봅시다.

박 위원님, 동의 좀 해 주십시오.

○**박형수 위원** 저는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기사업법에 대해 가지고 아직 논의를 덜 했잖아요.

○**소위원장 김원이** 그거는 나중에, 그거는 넘겼으니까……

○**박형수 위원** 아니, 뭘 넘겨요? 그건 다음에 계속 심사하기로 했잖아요.

○**소위원장 김원이** 계속 심사로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늘 의결할 거 아니니까……

○**박형수 위원** 그런데 그것보다도 지금 더 신중하게 다뤄야 될 이 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그걸 나중에 한다 그러면 그 결론은 이미 여기에 준해서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소위원장 김원이** 박 위원님, 정부 측에서도 여기서 편 하기는 그렇잖아요.

○**박형수 위원** 잠깐만요. 정부 측에 제가 질문할게요.

지금 이 상태로 통과시켜도 되는 겁니까, 그대로?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저희가 수정의견을 냈는데……

○**박형수 위원** 수정을 임의규정으로만 바꾸면 나머지 거는 검토 안 하고 지금 이 상태

로 통과시켜도 돼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앞에 말씀드렸듯이 전기사업법은 이미 6조에 기본적인 보편적 공급에 대한 근거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근거가 있는데 추가적인 근거를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도시가스사업법은 그런 근거조차 아예 없었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복지할인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근거 조항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다만 그 근거 조항은 강제조항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전기사업법과 달리 도시가스사업법은 민간사업자는 가스공사든 복지할인에 대해서는 공급비용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년도에 요금 인상 과정에서 이 복지 할인에 대한 부분을 다른 일반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전기 쪽보다는 조금 사정이 낫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형수 위원** 그래서 지금 그걸 임의규정으로 바꾸면 정부는 동의하겠다는 취지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그래서 보편적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편적 근거 조항을 뒤 달라는 취지입니다.

○**정진욱 위원** 이거는 많은 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정보가 없어서 하는 정말로 극히 일부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박형수 위원** 그건 맞아요. 그 취지는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취지는.

○**소위원장 김원이** 박 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박형수 위원** 잠깐만요.

○**소위원장 김원이** 이제 여기까지 하시지요. 제가 오늘은 발언 기회를 다 드렸으니까 이 정도 해서 이 문제는 정부 측……

○**박형수 위원** 아니, 소위원회에서 발언 기회를 주고 안 주고 그런 거 따질 겁니까?

○**소위원장 김원이** 아니요, 오늘은……

○**박형수 위원** 소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토론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원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박형수 위원** 무제한이라는 말이 제가 필리버스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마치, 발언 기회를 무슨 시혜를 베풀 듯이 주는 걸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렇게 말씀 들리셨다면 죄송하고요. 지금 얘기는 죄송합니다.

○**박형수 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소위원장 김원이** 제가 조금만 더……

○**박형수 위원** 그러면 먼저 얘기하고 제가 얘기할게요.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먼저 얘기하세요.

○**박형수 위원** 저는 지금 이 가스법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약 계층한테 지원해 주자고 하는 거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법률로 이거를 규정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정치하게 보자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통과되고 다음 기회에 통과된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큰 차이가 바로 생깁니까?

그런 거를 법안을 하나 더 처리하겠다 이런 욕심으로 우리가 졸속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가면, 일단 다음 단계가 어디로 갑니까? 법사위 가잖아요. 법사위 가면 또 이런 문제 가지고 법률상 위헌이냐, 아니냐 이런 거 갖고 또 홀딩될 수 있어요. 저는 충분히 논의를 하고 다음에 통과시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소위원장님이 발의한 기본 취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그거 다 동의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더 무리 없이 그렇게 법안을 만들 수 있는데 굳이 오늘 이렇게 통과시킬 필요가 있느냐.

○소위원장 김원이 알겠습니다.

강승규 위원님.

○박형수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전기통신법에.....

○소위원장 김원이 전기사업법.

○박형수 위원 누설했을 때의 처벌규정, 개인정보 누설 그것도 좀 더 보자고 그랬지요. 그다음에 그 체계도 1호·2호가 지금 같이 붙어 있는 것이 맞는지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거 검토 안 하고 그대로 다 그냥 보내겠다고요? 이번에 한 번 하고 다음에 더 한 번 하는 게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걸 그렇게 자꾸 조급하게 통과시키려고 그러니까.....

○소위원장 김원이 알겠습니다.

강승규 위원님도 요청하셨으니까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제가 차관님에게 물어볼게요. 지금 박형수 위원님하고 차관님 답변에 약간 간극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끝까지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전기요금을 법령에 넣어서 요금 조정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요금체계라든가에서 맞느냐, 실제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등을 에너지바우처 등으로 복지 차원에서 주머니가 다른 데서 시행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사업법을 요금에다가 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아까 저는 이해를 했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예, 맞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런데 도시가스사업에서는 지금 차관님이 답변한 게 전기사업법의 개정 내용과는 조금 내용이 다르다 하면서 도시가스 요금에는 도매나 소매업자들한테 가스 요금을 결정을 해 줄 때 감면되는 것 등, 실질적으로 근거 조항은 없었지만 감면되는 것 등을 그다음 해에 요금 책정할 때 반영하도록 해서 이미 감면을 하더라도 그다음에 사업자가 그게 민간이든 가스공사든 가스요금에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 규정만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또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만들어 놓으면 큰 무리가 없다는 게 아까 차관님 답변이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맞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런데 박형수 위원님께서는 오히려 가스요금에 민간 소매업자 등에 있어서, 민간 사업자들이 들어가 있고 그들이 시장에서 가격을, 가스를 공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요금을 감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강제규정으로 해 놨을 때 민간시장의 그런 자율성을 해치는 게 아니냐라는 게 박형수 위원님의 논지였

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지금 차관님 답변과 박형수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과는 약간 간극이 있어 보여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제 얘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사업법과 동일한 근거 조항을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전기도 마찬가지고 가스도 마찬가지고 복지 할인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전기사업법은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6조에 보편적 공급과 관련된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통해서 저희가 복지 할인을 약관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사업법은 그거에 준하는 어떠한 근거 조항도 현재 도시가스사업법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론 에너지법에 포괄적인 근거 규정은 있습니다만 도시가스사업법에 어떠한 근거 규정도 없어서 최소한 현재 복지 할인 제도를 운영하는 데 따른 근거 정도는 만들어 주시는 게 전기·가스사업법과의 형평을 맞추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다만 전기·가스사업법에서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대상을 나열하는 데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약관에서 해결해야 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부 측에서 안도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게 아니라 약관을 통해서 재량권을 주자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직권신청에 있어서는 여름보다는 겨울에 난방이 안 돼서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직권신청에 더 민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기 같은 경우는 가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혜 대상자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이 추가로 들어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다시 한번 하나만 더……

거기에 지금, 박형수 위원님은 그 직권이라는 부분이 결국 민간 부분의 사업자들한테 강제규정으로 하는 것이, 요금체계 법에다가 그거를 직권으로 한다는 것이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맞느냐는 게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런데 조항에—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소매사업자는 빠져 있습니다, 직권신청의 대상에. 보시면 저희가 가스도매사업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제한을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가스공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가스공사와 시군구가 협력해서 하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사실상 사회보장 서비스, 정보망을 연계시켜서 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말씀 끝나셨나요?

○**강승규 위원**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 낼게요.

박형수 위원님 의견도 있고 전기사업법도 좀 숙려 기간을 거치기로 했으니까 이 부분도,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장님의 발의하신 거니까 한 번 더 숙려 기간을 가져서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한 깔끔한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어떤가 싶네요.

○**정진욱 위원** 저도 말씀 좀……

○**소위원장 김원이** 김동아 위원님 먼저 하시고, 첫 발언이니까.

○**김동아 위원** 어차피 그걸 숙려 기간을 거치든 다음에 하든 간에 박형수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 부분은 이거는 기간을 지난다 해도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걱정과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이게 헌법체계의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보완을 한다 해도 똑같은 문제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취약계층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다 동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취약

계층을 지원한다는 거에 동의한다는 것 자체가 공공복리에 우리가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체계상 비추어 보더라도 이게 강제적 의무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한다면 공공복리 차원에서 보편적인 사업자를 규정하는 게 저는 꼭 헌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박형수 위원님께서 한 번 더 좋게 봐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고 희망도 있고 또 향후에 아까 말씀하신 LPG 사업자나 아니면 등유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함께 고민해서 할인제도나 이런 것을 같이 만들어 가는 게 서로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김동아 위원님 발언 감사하고요.

서일준 위원님 듣고 이제……

○정진욱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거니까……

○소위원장 김원이 아니요, 서일준 위원님이 먼저 저한테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서일준 위원님이 먼저 청하셨어요.

○서일준 위원 아까 차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가스공사 입장은 혹시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러니까 사실은 가스공사는 저희랑 동일한 입장입니다. 하나만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 전기요금, 전기사업법 때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요금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반대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요금으로 해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 조항은 삭제해 달라고 저희가 정부 측의 입장을 드렸습니다.

다만 가스공사는 어찌 됐든 정부 재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 재정 조항을 넣어 달라고 의견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거는 어찌 됐든 앞에 마찬가지로 공급비용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재정 지원 조항은 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진욱 위원님.

○정진욱 위원 도시가스사업법은 형법이 아닙니다. 먼저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좀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이 의원님 원래 안에 보면 공급 규정에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해서 굉장히 구체화하고 있는 것을 ‘빈곤층 등’으로 지금 생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금감면 서비스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굉장히 크게 양보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해야 한다’가 위헌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법인 에너지법 말씀을 드렸고요. 모법인 에너지법에 ‘에너지 공급자는 보편적으로 에너지가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법체계에서 무슨, 위헌 시비가 어디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임의규정으로……

○소위원장 김원이 정 위원님.

○정진욱 위원 잠깐만요. 임의규정으로 바꾸면서 이제 그런 시비로부터 벗어났는데……

○소위원장 김원이 정 위원님, 다른 게 아니라 정부 측하고 토론해 주세요.

○정진욱 위원 그다음에 직권이라는 말에 대해서 전혀, 지금 본인이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직권에 대해서 지금 차관님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직권은 사업자가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별처 조항인데요. 별처 조항에서 하나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 하 나는 관을 망가뜨린 사람. 맞습니다. 이 2개가 나란히 존재하는 것은 법체계상 볼 때 굉장히 부조화스럽게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나요? 이게 제가 형법 전이 아니라고 한 거는 형법전이면 조항을 달리해서 파괴죄 넣고 그다음에 정보와 관련된 죄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가스법 안에서 그것을 소화하다 보니까 부득이 한 건데 이런 걸 이유로 해서, 지금 원래 이 법의 취지가 뭔가에 대해서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대상이라든가 방식에서……

○소위원장 김원이 마무리해 주세요.

○정진욱 위원 이 법안이 보편적인 많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라면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조항은 취약계층, 아주 극히 일부분인, 실제로 아마 해당되는 분들의 숫자를 따져도 굉장히 적은 숫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물론 우리가 이삼 주 또 시간을 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왜 올라왔을까요? 저는 시간을 다툰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말씀 감사합니다.

○박형수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 제가 한 말씀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따라서 말씀드릴게요.

○소위원장 김원이 아니, 잠깐만요.

○박형수 위원 잠깐만요.

○소위원장 김원이 박 위원님.

○정진욱 위원 아니, 하세요. 하세요.

○소위원장 김원이 아니요아니요아니요. 이것은 상대 위원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보다는 정부 측에 자기의 의견이나 정부 측 의견을……

○정진욱 위원 아니, 정부가 이미 동의한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원이 아니, 그렇더라도, 그렇더라도 그런 기본적인 어떤 뭐…… 뭐라고 그래야 되나. 우리 관행, 관례 이런 것은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 박형수 위원님도 너무……

○정진욱 위원 아니, 이 법이 어떻게 해서 위헌입니까?

○박형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얘기 좀 하십시오.

○소위원장 김원이 예, 박 위원님.

○정진욱 위원 저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말씀하시도록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박형수 위원 저도 말씀 다 듣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저는 이 소위원회 회의가 정부 측을 상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토론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설득도 해야 되고 서로 간에 비판도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약간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그런 비판에 가까운 것은 가능하면 서로 삼가 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개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각자의 생각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위헌 제가 얘기한 부분에 사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위헌이 될 수 있지요. 우리가 소비재 산업, 예를 들어서 무슨 물을 생산하는 사람한테 ‘당신, 가격을 얼마 이상으로 올리지 마세요. 얼마로 받으세요’라고 하면 이 법 위헌이겠습니까, 위헌이지 않겠습니까? 위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공복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쟁 상황이라든지 또는 물이 아주 귀해 가지고 이럴 때, 그럴 때는 제한하는 법률이 위헌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제한을 한다고 그러면 위헌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공공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재를 공급한다고 해서 무조건 공공복리와 연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때에 따라서 공공복리에 따른 제한이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과도한 제한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직권이라는 말 자체가, 기본적으로 직권이라는 말을 언제 씁니까? 재판을 할 때 당사자가 양쪽 당사자가 있으면 그것을 재판하는 사람이, 재판장이 또는 재판부가 뭘 신청하라고 할 때 직권신청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당사자인 사람이 아닌 사람이 하는 것을 통상 직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 직권이라는 말이 그걸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단 용어상으로 이게 적절한지가 의문이다, 다른 표현이 있다라면 다른 표현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감면을 해 주는 사람이 직권으로 그걸, 내가 감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감면을 했을 경우에 의무적으로 내가 다 신청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감면하지 않을 겁니다, 내 일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항은 의무로 돼 있을 때, 의무로 돼 있을 때는 같이 세트로 의무로 신청하도록 하는 것 이게 가능할 수 있는데 임의규정으로 바뀌면 그게 조화가 되지 않아요.

○소위원장 김원이 알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이런 법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별칙 조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칙 조항 아주 간단해요. 그 부분을 따로따로 하면 돼. 1호·2호로 하지 않고 별개의 조항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보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로 떨어뜨리면 되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정보 제공을 누설했을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 이게 적정한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자는 겁니다. 전기사업법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가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규정해야 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법률과 형평이 맞지 않으면 그 전기사업법 규정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고치고 우리 것도 고쳐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걸 마치 무슨 이 법안을 통과 안 시키기 위해서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처럼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박 위원님, 잠깐. 같은 얘기……

○정진욱 위원 아니요아니요.

○소위원장 김원이 잠깐만요, 제 얘기……

○정진욱 위원 아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직권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소위원장 김원이 아니아니, 직권에 대한……

○정진욱 위원 아니아니, 잠깐만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 취약계층이 신청의 당사자입니다. 지금 법안 내용을 자세히 한번 좀 보기를 부탁드리고요.

○박형수 위원 봤습니다.

○정진욱 위원 그래서 당사자이고 그 당사자가 아닌 공급자나 지자체가 직권으로 하는 겁니다. 그걸 누누이 말씀드리는 데 전혀 지금 다른 말씀을 계속하고 계셔서 정말 답답합니다.

○박형수 위원 그러니까 그 표현을……

○소위원장 김원이 자,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박형수 위원 다른 뭐 좋은 게 있으면 좋지요, 그게.

○소위원장 김원이 잠깐만요. 제가 직권으로…… 아니, 박형수 위원님이 하신 얘기도 충분히 우리가 수용할 만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박형수 위원님, 이렇게 조정해 보면 어떨까요? 차관님도 들으세요.

‘직권으로’라고 하는 표현 대신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대신하여’, 이런 정도로 조정하면 어떨까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사실상 직권으로라는 표현 자체가 너무 강하고요, 왜냐하면 뒤에 동의가 전제돼 있기 때문에 동의할 경우에 신청을 대행해 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렇지요. 그래서 대신하여 정도로 조정하면 어떨까요? 직권이라는 표현이 사실 뭐 그렇게 부담스러우면…… 사실 이것은 아까 정진욱 위원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이 조항은 감면받는 사람이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모르는 사람, 몰라서 그 혜택을 보지 못해서 돌아가실 뻔한 이런 사건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법이어서 이 대상자는 매우 협소할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 신청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이 압도적 다수거든요. 그런데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없어서 못 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직권이면 어렵고 대신이면 어렵습니까?

그래서 박형수 위원님이 좀 통 크게 대신하여 정도로 수정을 해서 하면 용인해서 이 법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별처 조항은 좀 그런 의견도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조항과의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이런 정도로 수정해서 통과시키면 어떨까요? 박 위원님, 통 크게 양보, 그런 정도로 수정안을 받아 주시지요.

○박형수 위원 통 크게가 아니고……

○소위원장 김원이 제가 지금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양보했고 직권이라는 표현을

저는 쓰고 싶은데 위원님 얘기를 들어서 사실은 대신, 대행하여, 대신하여 정도로 받는 거니까 이런 정도로……

○박형수 위원 직권이나 대신하여나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아이, 또 왜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그런 정도로 수정합시다.

○박형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강승규 위원님도 통과 동의하시는가요?

○강승규 위원 아니, 제가 그래서 좀…… 이번에 위원장님의 또 발의한 법이니까 이번에는 숙려를 한번 하자 이런 의견을 좀 드렸는데.

○소위원장 김원이 그런 정도로 수정해서 통과시켜 주시지요.

○박형수 위원 숙려를 하자라고 그러는데?

○소위원장 김원이 아니아니. 그런데 제가 그때는 직권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는 동안이 있고 방금 대신하여로 지금 수정안을 낸 거니까 대신하여를 받아 주시지요.

○박형수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수정안 낼게요.

일단 다들 그러시니까 소위원회에서는 통과를 시킵시다. 통과를 시키고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 이게 또 내일이네.

○소위원장 김원이 내일이에요.

○박형수 위원 시간이 좀 있으면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얘기한 문제점들을 검토해서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면 이걸 다시 논의한다든지, 전체회의에 계류된 상태에서 다시 논의하고 해도 되거든요.

○소위원장 김원이 전체회의에서 의논은 할 수 있겠지요. 그런 정도로 내일 의견 개진을 하시고, 어쨌건 또 전체적인 의견들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지요.

대신하여 정도로 수정하면 어떨까요?

○박형수 위원 그런데 내일이라서 안 되겠는데, 이것.

○소위원장 김원이 제가 직권으로라는 멋진 표현에서 양보했으니까……

○박형수 위원 직권 그것 중요하지도 않은 것 빼 가지고 그렇게……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대신하여 정도로 수정해서 이걸 수정 의결…… 그리고 정부 측이 수정의견에 대해서 반고 그런 정도로, 직권으로 대신하여 정도로 수정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님, 그 정도 괜찮습니까?

그러면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안을 지금 빨리…… 그렇게 조정된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소위원장 김원이 조문 조정 다 된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대신하여를 반영해서, 수정의견 반영해서……

○소위원장 김원이 그걸 해서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파, 되다.

○박지혜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소위원장 김원이 의사진행발언.

○박지혜 위원 저희 어쨌든 내일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으니까요, 말씀하신 우려 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조금 오해가 있으신 건 아닌가 그 의문이 들어서 그냥 제 의견만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고 싶은데요.

○소위원장 김원이 의결은 된 상태입니다.

○박지혜 위원 예.

사실 민간사업자가 포함되었다는 부분 때문에 좀 더 불편해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유의 복지할인이라는 것이 민간사업자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많은 산업들에서 시행이되고 있고 지금 통신서비스 요금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민간기업들이 하는 건데 할인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 도시가스사업과 같은 경우도 내부 지침으로 요금 경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차원이니까, 없던 것을 요금 할인을 해 주자 이런 차원이 아니니까요 그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려하셔서 내일 전체회의에서도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서일준 위원 아니, 덧붙여서 그냥 한 말씀만 차관님한테 여쭤볼게요. 수정안이 통과되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부담액을 다음 해에 요금 인상 요인에 포함시켜서 회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회수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래서 이번에 일단 6.8% 정도를 지금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서일준 위원 그게 회수가 돼야 됩니다, 민간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통과되기 전까지는 이 이야기를 안 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소매 비용은 사전에 먼저 인상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수금이 많이 쌓여 있는 게 가스공사 미수금이 많이 쌓여 있어서 1차로 6.8% 인상을 반영해 놨고요. 내년도에……

○서일준 위원 전기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전기요금은 아직 인상을 못 했습니다.

○서일준 위원 전기요금은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그렇습니다.

○서일준 위원 가스요금 한다는 이야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이미 저희가 발표를 했고 8월 1일부터 6.8% 인상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잠깐 쉬려고 했는데 그냥 남은 두 법이 에너지이용 합리화 법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이 큰 이견이 없는 법안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아서 그냥 이어서

내처 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17항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자료 90쪽입니다.

의사일정 16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안, 17항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안입니다.

두 법은 동히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 자율성 제고 관련된 법률안입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치 입법권 강화 및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한 법령정비 계획을 마련했고 관련 법령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올해 80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산자부 소관 법률은 2개이고 우리 산자위원회 소관은 중기부 소관이 1건 더 있어서 3건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2건의 법률안이 소관입니다.

91쪽,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에너지다소비사업자로부터 신고받은 내용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통보하도록 규정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각 지역별 유통산업 발전시행계획 관련 사항과 대규모 점포 등의 관련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 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간의 관계를 보다 대등하고 상호 협력적인 관계로 설정해서 지방분권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경우에 시행일을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 있는데 앞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과 같이 공포한 날로 앞당기는 것도 별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위원님들……

○**소위원장 김원이** 질의하실 위원님…… 예?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수정의견에 동의하고요, 다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과는 달리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시행규칙이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도 또 보고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뀐다 하더라도 또 시행규칙을 바꿔야만 이게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는 문제가 있어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과는 달리 이렇게 경과조치 규정을 원래 법에서 뒀던 겁니다.

물론 내년 2월 15일까지만 개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검토의견처럼 해도 크게 현실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만 경과조치를 같이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둬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이론적으로는 맞을 것 같습니다.

○ 소위원장 김원이 수석님 의견…… 원안대로 하자?

○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 소위원장 김원이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려면……

○ 강승규 위원 아까 하나 남았지 않아요?

○ 소위원장 김원이 아니요. 다 했어요.

○ 강승규 위원 다 했어요?

○ 박지혜 위원 12항을 아직……

○ 강승규 위원 아까 12항인가 안 했어요. 의결 안 했어.

○ 소위원장 김원이 아, 12항. 12항 의결을 해야 돼요.

12항 자료 다 받으셨나요?

그려면 의사일정 제16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려면 12항으로 돌아와서……

○ 강승규 위원 17항도 의결해야지요.

○ 소위원장 김원이 아, 17항.

의사일정 제17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초짜배기라……

의사일정 제12항 국가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예고, 생각보다 두꺼운 자료가 와 있는데, 행정예고가 와 있는데요. 이것을 참고해서 그때 우리가 의논하자는 거였지요.

○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제가 아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까요?

○ 소위원장 김원이 예, 차관님 먼저 설명 주십시오.

○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보내 드린 자료가 두터운데 다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2페이지하고 6페이지를 보시면 전체 그림을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2페이지 중반에 보시면 여기서 정의하는 산업기반시설 5개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 전기, 도로, 폐수처리, 처리수 지하관로, 5개인데 이 5개는 지금 특화단지에서 가장 소요가 많고 또 부담이 커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자들의 의견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6페이지로 가시면 이런 5개의 인프라 산업기반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느냐를 표로 정리를 해 놨는데 보시면 지금 현재는 이 고시가 시작이 되었을 때는 바이오톤화단지가 지정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3개에 대해서만 일단 표가 되어 있고요. 투자 규모에 따라서 상·중·하로 나눠 놓고 투자 지역도 비수도권·수도권 이렇게 나누어서 최대 30%, 최소 15% 구간을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100조 원 이상의 투자가 소요되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된다고 봤을 때 그 클러스터가 비수도권에 이렇게 조성이 될 때에는 이 산업기반시설에 최대 30%까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고, 그러면 최대가 30%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 지원되느냐 할 때는 이것은 기재부가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그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다음에 바이오에 대해서는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서 이 표에다 다시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다른 위원님들 질의.

○**강승규 위원** 아까 이것을 고시로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수도권에 30% 범위 내에서까지 기재부가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대통령령으로 이것들이 들어가면 좀 더 까다롭게 운영되는 것이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디스플레이 이렇게 세 가지가 돼 있는데 지금 바이오처럼 특화단지가 또 계속 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또 시행령을 바꿔야 되고 하면 이게 적기에 지원하기가 어려워서 고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대통령령이나 고시나, 그런데 고시 내용이 보니까 굉장히 상세하게 마련돼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추가 말씀 주시면…… 정진욱 위원님.

○**정진욱 위원** 저는 다른 의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안에서 기재부와 협의해서 산자부가 정한다, 기재부의 영향력을 법안에서 직접 인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방식의 법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저는 그대로 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다른 분들 의견 있습니까?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 차관님, 차관님은 지금 대통령령으로 가는 것과 고시로 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유연성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대통령령으로 하면 이것을 바꿀 때마다 국무회의에 상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그렇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런 절차들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 그런 점을 좀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그렇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예의 경우에, 통상적으로 법률의 체계를 보면 법률에서 위임을 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게 원칙이지요. 그런데 가끔씩 보면 부령으로 바로 위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게 고시가 대부분 그런 경우인데 그런 사례들을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오늘 지금 당장 시행령으로 할

것인지 고시로 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러한 비슷한 사안에서 고시로 한 경우가 있고 그 경우에는 왜 이렇게 했는지 또 이것을 고시로 안 하고 시행령으로 했을 때는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지를 충분히 좀 설명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것을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당장 이것 시행령이다, 고시다 이렇게 바로 우리가 뭘 찍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산업부에서 고시로 하는 것에 대한 유용성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사례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때 우리가 결정하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박성택** 알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한마디 의견 좀 보태자면 아까 정진욱 위원께서 대통령령으로 하자고 한 취지는 중요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통령령 내에서도 신규 지정하거나 하는 부분은 고시로 충분히 넘길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진욱 위원** 그렇습니다.

○**김동아 위원** 그것을 따로 그냥 고시면 고시, 대통령령이면 대통령령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서 답변하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 생각하고요. 중요한 기준, 핵심적인 기준, 특히나 지역균형발전이나 이런 부분은 대통령령에 넣고 신규로 지정되거나 하는 부분은 그 대통령령 내에서 고시로 위임하든지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든지 해서 그런 처리로 처리하면 충분히 될 문제인데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하면 하나를 바꿔도 모든 걸 다 우리가 고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더 이상 논의에 진척이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했을 때 관련된 부분, 아까 박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은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박성택** 위원님들 말씀을 참고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다음번에 좀 추가 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다른 분 의견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진욱 위원** 첨단산업 관련해서는 고동진 위원님께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코멘트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고동진 위원** 아까 저희 의원실에 외부에서 손님이 와서 잠깐…… 이것 우리가 아까 같이 봤던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차관님한테 물어본 것도 대통령령으로 했을 때 아니면 산자부하고 기재부하고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고시로 하는 게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라고 질문을 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가 강한 것을 인정했다 이것보다는 참 산자부가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우려는 있어서 아까 질문을 했더니 문제없습니다라고 차관님이 말씀하셨었지요, 아까?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박성택** 예.

○**고동진 위원** 그런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저는 솔직히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그 안에서 고시로 가져간다든가

이런 방법도 또 가능, 더 유연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한번 조금 좀 보완을 해서 가져가는 게 어떤가 싶네요.

○**소위원장 김원이** 고동진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 취지는 법안에 담고 대통령령에 좀 유연하게 담아 놓고 그것을 고시로 내려가면서 좀 더 구체화한다든가 좀 더 유연하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그게 아까 김동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안 같은데요. 대통령령에 기본적인 그런 기준 같은 것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거기에서 다시 하부에, 자세한 것은 고시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좀 검토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좋은데요? 모처럼 생산적인 결론이……

○**박지혜 위원** 저는 짧게만 그냥 의견이 있는데요.

여기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를 대안으로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도 조금 의문은 있었거든요. 그냥 산업부장관이 정하도록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어쨌든 내부적으로 협의는 하시더라도 꼭 법령에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해야 되는지 그게 조금 의문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검토하실 때 같이 그냥 검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협의라고 하면 항상 또 그 부처의 동의를 얻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소위원장 김원이** 항상 협의의 결과는 힘센 쪽으로 가지요.

○**고동진 위원** 추가적으로 하나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대통령령의 범위로 잡아놓으면 이게 어차피 국무회의로 올라갈 거지요. 그렇게 되면 산자부나 기재부가 동일 선상에서 같이 협의를 할 수 있고 거기서 의사결정을 거친 이후에 고시로 가져가게 되면 산자부 입장에서는 아마 좀 더 유연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을 검토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다른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김동아 위원님, 고동진 위원님 좋은 의견인 것 같은데?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관님, 그런 방향으로 해서 대안을 좀 모색해 주시고요. 그렇게 수석전문위원님도 같이 의논해서 좋은 대안을 다음번 회의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산자 법안소위였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했는지 사회를 잘 봤는지 그리고 혹은 여기 위원님들이 자기가 준비해 온 안들을 제대로 잘 설명해서 했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하여간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성택 1차관님, 최남호 2차관님 등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강승규 고동진 김동아 김성환 김원이 박지혜 박형수 서왕진 서일준 이재관
정진욱 허성무

○출장 위원(1인)

주호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박성택

2차관 최남호

정책기획관 김대자

산업정책관 강감찬

산업공급망정책관 윤성혁

첨단산업정책관직무대리 이규봉

지역경제정책관 박종원

중견기업정책관 제경희

전력정책관 이옥현

자원산업정책국장 윤창현

특허청

청장 김완기

기획조정관 구영민

산업재산정책국장 목성호